

# 제329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2월3일(수)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한 철회동의의 건
2.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42. 인성교육진흥법안
4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59.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 9
2.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 9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1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배기운·전순옥·강창일·박남춘·장하나·정성호·이원욱·이윤석·강동원 의원 발의) ..... 11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성완중·염동열·정희수·이명수·손인춘·권성동·김태흠·이인제·이우현·김성찬·문정림 의원 발의) ..... 11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재운·유성엽·도종환·김동철·배재정·김광진·박지원·정성호·김성곤·부좌현·박기춘 의원 발의) ..... 11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영석·주호영·강은희·홍지만·김한표·서상기·김세연·박윤옥·김종태·안홍준·김영우·윤명희 의원 발의) ..... 11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유기홍·이찬열·윤관석·정성호·김관영·이원욱·최원식·유성엽·유은혜·오영식·홍영표·부좌현·오제세·장하나·이목희·박홍근·박남춘 의원 발의) ..... 11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상희·

- 김윤덕·강기정·도종환·안민석·은수미·이찬열·부좌현·박혜자 의원 발의) ..... 11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김재윤·이미경·유기홍·유성엽·김광진·정성호·양승조·김윤덕·도종환·박홍근·윤호중·부좌현·한명숙·한정애·박혜자 의원 발의) ..... 11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박홍근·배재정·김상희·정세균·유기홍·박혜자·윤관석·안민석·신학용·이학영·홍익표·진성준·신경민·김용익·김태년·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0) ..... 11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도종환·박혜자·김상희·김윤덕·배재정·정세균·박홍근·윤관석·정진후·우원식·김태년·안민석·장하나 의원 발의) ..... 11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유기홍·박혜자·안민석·배재정·박홍근·박원석·서기호·도종환·심상정·김제남 의원 발의) ..... 11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홍근·김상희·유기홍·도종환·이찬열·윤관석·김태년·이언주·김광진·정진후·김재윤·강창일·서상기 의원 발의) ..... 11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박창식·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종범·정의화 의원 발의) ..... 11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윤재욱·장윤석·이상일·최봉홍·김상민·이강후·박성호·박윤옥·이우현 의원 발의) ..... 12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장하나·김광진·김재윤·김상희·박민수·박주선·배재정·백재현·최민희 의원 발의) ..... 12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성주·유기홍·배재정·박혜자·박주선·강기정·진성준·김관영·장병완·김태년·김재윤·정진후·진선미·안규백·부좌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00) ..... 12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남춘·전병헌·변재일·박홍근·김성주·안민석·김현미·안규백·신학용 의원 발의) ..... 12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박명재·안홍준·류지영·주호영·박창식·윤명희·이에리사·전하진·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6) ..... 12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훈·장윤석·이채익·강은희·주호영·심학봉·김태흠·서용교·김을동·신성범 의원 발의) ..... 12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김성곤·심상정·정진후·박원석·서기호·김현미·전순옥·홍영표·강동원·이목희·최민희 의원 발의) ..... 12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윤후덕·신학용·추미애·배재정·이상직·김성곤·이목희·김승남·김상희 의원 발의) ..... 12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나성린·서상기·홍철호·김장실·주호영·배덕광·양승조·강은희·류지영·황인자·이종훈·윤상현·박민식 의원 발의) ..... 12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김태원·박대동·박덕흠·박윤옥·배덕광·송영근·유일호·윤명희·이운룡·이장우·이종진·이한성·정수성 의원 발의) ..... 12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상일·윤명희·서청원·김종태·이철우·신경립·홍철호·양승조·정병국·유승우·이한성·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5) ..... 12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재윤·유성엽·도종환·김동철·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 .....	12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박창식 · 문대성 · 김한표 · 이학재 · 박명재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안종범 · 김정록 · 정의화 의원 발의) .....	12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 .....	12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 .....	12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안민석 · 장하나 의원 발의) .....	12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 .....	12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 .....	12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배재정 · 이찬열 · 장하나 · 황주홍 · 이상직 · 김성곤 · 전순옥 · 홍의락 · 정세균 의원 발의) .....	12
3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 .....	12
35.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 .....	13
36.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 .....	13
3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 .....	13
38.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장하나 · 안민석 의원 발의) .....	13
39.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 .....	13
4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 .....	13
41.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문헌 · 정수성 의원 발의) .....	13
42.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김성찬 · 안홍준 · 손인춘 · 유승우 · 이재오 · 김장실 · 이강후 · 여상규 · 정병국 · 이채익 · 이현재 · 김성곤 · 김을동 · 윤관석 · 이한구 · 김춘진 · 백재현 · 임내현 · 안효대 · 장운석 · 심윤조 · 함진규 · 정문헌 · 서용교 · 김태호 · 김종태 · 길정우 · 이완영 · 이자스민 · 성완중 · 주영순 · 신학용 · 문정립 · 나성린 · 이학재 · 송광호 · 박인숙 · 조명철 · 한기호 · 황진하 · 이찬열 · 최원식 · 윤후덕 · 김정록 · 원유철 · 이명수 · 유성엽 · 김영우 · 이만우 · 박민식 · 서기호 · 이이재 · 김희국 · 안덕수 · 유기홍 · 박창식 · 김현숙 · 강은희 · 김희정 · 송영근 · 류지영 · 윤명희 · 조원진 · 김상민 · 정수성 · 조경태 · 김정훈 · 유승민 · 신경립 · 오병윤 · 이종훈 · 김학용 · 정세균 · 김재경 · 서상기 · 유재중 · 김상훈 · 박성호 · 이진복 · 한선교 · 윤영석 · 이에리사 · 주호영 · 정우택 · 정진후 · 박윤옥 · 박주선 · 이군현 · 진성준 · 김동철 · 원혜영 · 홍지만 · 김광진 · 이우현 · 권성동 · 강석호 · 한명숙 · 박대동 · 양승조 · 문대성 · 이병석 의원 발의) .....	13
4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 (이상일·송영근·김을동·김장실·윤재옥·유일호·주영순·주호영·신성범·김희선·이한성·길정우·이에리사·이종훈·유재중·염동열·안홍준·신의진·강은희·류지영 의원 발의) ..... 13
4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병석·김상희·유인태·박혜자·이개호·김광진·정진후·배재정·유은혜·김기식·홍종학·남인순·윤관석 의원 발의) ..... 13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김세연·김장실·김태원·박인숙·손인춘·송영근·심재철·안홍준·李宰榮·정희수·함진규 의원 발의) ..... 13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배기운·김우남·김춘진·장하나·김제남·윤후덕·이미경·이윤석·김기준 의원 발의) ..... 13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유은혜·홍의락·박홍근·김승남·정진후·김상희·배재정·배기운·도종환·김태년 의원 발의) ..... 13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이한성·김정록·정수성·박윤옥·홍지만·이명수·이강후·강기윤·박인숙 의원 발의) ..... 13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김광진·손인춘·조명철·김세연·박인숙·류지영·이운룡·이이재·김상훈·강은희·김성곤·남인순·정성호·홍문표·김종태·김동완·박대출·이현승·이채익·윤명희·김한표·이자스민 의원 발의) ..... 13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서영교·신장용·백재현·강기정·조정식·김광진·이석현·이종걸·이원욱 의원 발의) ..... 14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완구·문정림·이운룡·정희수·강기윤·함진규·김태원·김한표 의원 발의) ..... 14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박주선·최규성·배기운·김춘진·박민수·이원욱·신기남·정세균·김성주·이상직 의원 발의) ..... 14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진선미·유성엽·장하나·안민석·이찬열·김승남·남인순·정성호·박남춘·김재윤·김광진·전해철·최민희 의원 발의) ..... 14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윤석·전순옥·안민석·정진후·임수경·최민희·김재윤·윤관석·정성호·김성곤·원혜영 의원 발의) ..... 14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박명재·이우현·박성호·김희국·이장우·강석호·이현승·이현재·김진태·김기선·강기윤 의원 발의) ..... 14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박주선·안민석·박홍근·배재정·박혜자·유기홍·윤관석·정진후·도종환·유인태·조정식·유은혜·안홍준·문희상 의원 발의) ..... 14
5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이학재·이채익·김재경·박덕흠·조원진·안홍준·김희국·민현주·김도읍 의원 발의) ..... 14
58.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을동·서용교·김한표·김성찬·김민기·이우현·서상기·윤재옥·정병국·문대성 의원 발의) ..... 14
59.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14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배기운·전순옥·강창일·박남춘·장하나·정성호·이원욱·이윤석·강동원 의원 발의)(계속) ..... 15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성완중·염동열·정희수·이명수·손인춘·권성동·김태흠·이인제·이우현·김성찬·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 15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재윤·유성엽·도종환·김동철·배재정·김광진·박지원·정성호·김성곤·부좌현·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 15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윤영석 · 주호영 · 강은희 · 홍지만 · 김한표 · 서상기 · 김세연 · 박윤옥 · 김종태 · 안홍준 · 김영우 · 윤명희 의원 발의)(계속) ..... 15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유기홍 · 이찬열 · 윤관석 · 정성호 · 김관영 · 이원욱 · 최원식 · 유성엽 · 유은혜 · 오영식 · 홍영표 · 부좌현 · 오제세 · 장하나 · 이목희 · 박홍근 ·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15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15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15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박홍근 · 배재정 · 김상희 · 정세균 · 유기홍 · 박혜자 · 윤관석 · 안민석 · 신학용 · 이학영 · 홍익표 · 진성준 · 신경민 · 김용익 · 김태년 · 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0)(계속) ..... 15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안민석 · 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 15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 15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김태년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15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박창식 · 문대성 · 김한표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김정록 · 안중범 · 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 15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 · 윤재옥 · 장윤석 · 이상일 · 최봉홍 · 김상민 · 이강후 · 박성호 · 박윤옥 · 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15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장하나 · 김광진 · 김재윤 · 김상희 · 박민수 · 박주선 · 배재정 · 백재현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15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김성주 · 유기홍 · 배재정 · 박혜자 · 박주선 · 강기정 · 진성준 · 김관영 · 장병완 · 김태년 · 김재윤 · 정진후 · 진선미 · 안규백 · 부좌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00)(계속) ..... 15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박남춘 · 전병헌 · 변재일 · 박홍근 · 김성주 · 안민석 · 김현미 · 안규백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 15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박명재 · 안홍준 · 류지영 · 주호영 · 박창식 · 윤명희 · 이에리사 · 전하진 · 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6)(계속) ..... 15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훈 · 장윤석 · 이채익 · 강은희 · 주호영 · 심학봉 · 김태흠 · 서용교 · 김을동 · 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 16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김성곤 · 심상정 · 정진후 · 박원석 · 서기호 · 김현미 · 전순옥 · 홍영표 · 강동원 · 이목희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16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윤후덕 · 신학용 · 추미애 · 배재정 · 이상직 · 김성곤 · 이목희 · 김승남 · 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 16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나성린 · 서상기 · 홍철호 · 김장실 · 주호영 · 배덕광 · 양승조 · 강은희 · 류지영 · 황인자 · 이종훈 · 윤상현 · 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 16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 16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이상일 · 윤명희 · 서청원 · 김종태 · 이철우 · 신경림 · 홍철호 · 양승조 · 정병국 · 유승우 · 이한성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5)(계속) ..... 16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 16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박창식 · 문대성 · 김한표 · 이학재 · 박명재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안종범 · 김정록 · 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 16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16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16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안민석 · 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 16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 16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16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배재정 · 이찬열 · 장하나 · 황주홍 · 이상직 · 김성곤 · 전순옥 · 홍의락 · 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 16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 16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16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16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16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장하나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16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 16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17
41.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문현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 17
42.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김성찬 · 안홍준 · 손인춘 · 유승우 · 이재오 · 김장실 · 이강후 · 여상규 · 정병국 · 이채익 · 이현재 · 김성곤 · 김을동 · 윤관석 · 이한구 · 김춘진 · 백재현 · 임내현 · 안효대 · 장윤석 · 심윤조 · 함진규 · 정문현 · 서용교 · 김태호 · 김종태 · 길정우 · 이완영 · 이자스민 · 성완중 · 주영순 · 신학용 · 문정림 · 나성린 · 이학재 · 송광호 · 박인숙 · 조명철 · 한기호 ·

- 황진하 · 이찬열 · 최원식 · 윤후덕 · 김정록 · 원유철 · 이명수 · 유성엽 · 김영우 · 이만우 · 박민식 · 서기호 · 이이재 · 김희국 · 안덕수 · 유기홍 · 박창식 · 김현숙 · 강은희 · 김희정 · 송영근 · 류지영 · 윤명희 · 조원진 · 김상민 · 정수성 · 조경태 · 김정훈 · 유승민 · 신경림 · 오병윤 · 이종훈 · 김학용 · 정세균 · 김재경 · 서상기 · 유재중 · 김상훈 · 박성호 · 이진복 · 한선교 · 윤영석 · 이에리사 · 주호영 · 정우택 · 정진후 · 박윤옥 · 박주선 · 이군현 · 진성준 · 김동철 · 원혜영 · 홍지만 · 김광진 · 이우현 · 권성동 · 강석호 · 한명숙 · 박대동 · 양승조 · 문대성 · 이병석 의원 발의)(계속) ..... 17
4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송영근 · 김을동 · 김장실 · 윤재옥 · 유일호 · 주영순 · 주호영 · 신성범 · 김희선 · 이한성 · 길정우 · 이에리사 · 이종훈 · 유재중 · 염동열 · 안홍준 · 신의진 · 강은희 · 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 17
4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박병석 · 김상희 · 유인태 · 박혜자 · 이개호 · 김광진 · 정진후 · 배재정 · 유은혜 · 김기식 · 홍종학 · 남인순 · 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7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세연 · 김장실 · 김태원 · 박인숙 · 손인춘 · 송영근 · 심재철 · 안홍준 · 李宰榮 · 정희수 · 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17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배기운 · 김우남 · 김춘진 · 장하나 · 김제남 · 윤후덕 · 이미경 · 이윤석 · 김기준 의원 발의)(계속) ..... 17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유은혜 · 홍의락 · 박홍근 · 김승남 · 정진후 · 김상희 · 배재정 · 배기운 · 도종환 · 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17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이한성 · 김정록 · 정수성 · 박윤옥 · 홍지만 · 이명수 · 이강후 · 강기운 · 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17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 · 김광진 · 손인춘 · 조명철 · 김세연 · 박인숙 · 류지영 · 이운룡 · 이이재 · 김상훈 · 강은희 · 김성곤 · 남인순 · 정성호 · 홍문표 · 김종태 · 김동완 · 박대출 · 이현승 · 이채익 · 윤명희 · 김한표 · 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17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서영교 · 신장용 · 백재현 · 강기정 · 조정식 · 김광진 · 이석현 · 이종걸 · 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17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이완구 · 문정림 · 이운룡 · 정희수 · 강기운 · 함진규 · 김태원 · 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17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 17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진선미 · 유성엽 · 장하나 · 안민석 · 이찬열 · 김승남 · 남인순 · 정성호 · 박남춘 · 김재윤 · 김광진 · 전해철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17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윤석 · 전순옥 · 안민석 · 정진후 · 임수경 · 최민희 · 김재윤 · 윤관석 · 정성호 · 김성곤 · 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18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박명재 · 이우현 · 박성호 · 김희국 · 이장우 · 강석호 · 이현승 · 이현재 · 김진태 · 김기선 · 강기운 의원 발의)(계속) ..... 18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김태년 · 박주선 · 안민석 · 박홍근 · 배재정 · 박혜자 · 유기홍 · 윤관석 · 정진후 · 도종환 · 유인태 · 조정식 · 유은혜 · 안홍준 · 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18
5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 · 이학재 · 이채익 · 김재경 · 박덕흠 · 조원진 · 안홍준 · 김희국 · 민현주 · 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18
58.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김을동 · 서용교 · 김한표 · 김성찬 · 김민기 · 이우현 · 서상기 · 윤재옥 · 정병국 · 문대성 의원 발의)(계속) ..... 1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법안심사 일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법안이나 안전 관련 법안 등 시급히 심사해야 할 법률안에 한정하여 오늘 안건을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 2.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위원장 설훈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당 법안의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더라도 철회 의사에 따라 철회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열네 분이기 때문에 한 분 더 오셔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송합니다.

○김희선 위원 다 오셨네요.

○배재정 위원 오셨습니다.

○위원장 설훈 아, 오셨네요. 한 분만 더 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더라도 철회 의사에 따라 철회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상정 순서입니다.

상정에 들어가기 전……

○유기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예.

○유기흥 위원 자료 요청하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말씀하십시오.

○유기흥 위원 우선 첫 번째로 문체부에 대한 자료 요청인데요.

오늘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초 승마선수인 정윤희 씨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 특혜 시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승마협회를 특정해서 조사를 지시했는데 승마협회의 지난 몇 십 년간 역사상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정윤희 씨 측 협회 간부에게 문의하라고 지시했고 승마협회를 조사한 문체부는 “정윤희 씨 측과 반대 측 모두 문제가 많다.” 그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진룡 장관에게 감사를 담당할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을 좌천성 인사 하도록 지시했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 저희 교문위에서 왜 체육국장과 체육과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체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게 말끔하게 소명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체육국장·체육과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경질된 배경이 과연 이것이었나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노태강 체육국장은 영평하게도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또 진재수 체육과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경위 설명과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승마협회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드리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저희 상임위가 열렸으니 오늘 회의에서 문체부장관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교육부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을 드리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누차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황우여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모든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제가 제기하면서 “적어도 밥상에서는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황우여 후보자가 “공감하고 밥상의 불평등은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40만 원도 채 안 되는 명절상여금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예산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면허수당 포함해서 몇 가지가 마지막까지 예결특위에서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로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황우여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한 약속, 그 약속을 결과적으로 파기한 꼴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해서 황우여 장관의 신상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께 황우여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약속했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도록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정 위원 연결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설훈 잠깐만요.

문체부장관께서는 체육국장·과장 전보가 유진룡 장관 시절에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하시고, 상황을 더 파악하고 판단하실 부분이 있다면 오후에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요, 이게 전임 장관 때 일이라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언론보도 통해서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담당 국장에게 ‘이 언론보도 봤느냐?’, 봤다고 그랬고 현 담당 국장도 그 후에 임명된 사람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구체적인……

○위원장 설훈 그러면요, 오후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유기홍 위원 그리고요, 당시에 제출했던 보고서는 정본이든 사본이든 지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문체부장관이 발언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우선 보고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보고서가 있지요. 이런 조사가 진행됐고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데서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언론의 보도고요.

○위원장 설훈 오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연관되어서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부 노 전 체육국장과 진 전 과장이 해당 신문기사와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난해 7·8월 사이에 조사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간 것으로 지금 보도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조사보고서…… 금방 장관께서는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 조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26일부터 승마협회를 포함한 체육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황우여 장관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번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이나 또 여러 강사직,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학교의 여러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의치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명절휴가비 850억, 그다음에 급식비로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을 마련하려고 교문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뜻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는 재정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예결위에서도 결론이 난 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마는,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제 자신이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훑어 없이 서로 나누었고 또 TF팀도 만들어서 계속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문제와 여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어떻게 지원할 길이 없는 가도 관심을 갖고,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표시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을 교육부에서도 잘 새겨들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정리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9분)

○위원장 설훈 의사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 상정 순서입니다.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41항은 학교안전 관련 개정안 및 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5일 또는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관계로 오늘 상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 3개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을 하고 오늘 회의에 상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배기운·전순옥·강창일·박남춘·장하나·정성호·이원욱·이윤석·강동원 의원 발의)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성완중·염동열·정희수·이명수·손인춘·권성동·김태흠·이인제·이우현·김성찬·문정림 의원 발의)

###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재윤·유성엽·도종환·김동철·배재정·김광진·박지원·정성호·김성곤·부좌현·

박기춘 의원 발의)

###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영석·주호영·강은희·홍지만·김한표·서상기·김세연·박윤옥·김종태·안홍준·김영우·윤명희 의원 발의)

###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유기홍·이찬열·윤관석·정성호·김관영·이원욱·최원식·유성엽·유은혜·오영식·홍영표·부좌현·오제세·장하나·이목희·박홍근·박남춘 의원 발의)

###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상희·김윤덕·장기정·도종환·안민석·은수미·이찬열·부좌현·박혜자 의원 발의)

###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김재윤·이미경·유기홍·유성엽·김광진·정성호·양승조·김윤덕·도종환·박홍근·윤호중·부좌현·한명숙·한정애·박혜자 의원 발의)

###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박홍근·배재정·김상희·정세균·유기홍·박혜자·윤관석·안민석·신학용·이학영·홍익표·진성준·신경민·김용익·김태년·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0)

###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도종환·박혜자·김상희·김윤덕·배재정·정세균·박홍근·윤관석·정진후·우원식·김태년·안민석·장하나 의원 발의)

###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유기홍·박혜자·안민석·배재정·박홍근·박원석·서기호·도종환·심상정·김제남 의원 발의)

###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홍근·김상희·유기홍·도종환·이찬열·윤관석·김태년·이연주·김광진·정진후·김재윤·강창일·서상기 의원 발의)

###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박창식 · 문대성 · 김한표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김정록 · 안종범 · 정의화 의원 발의)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 · 윤재옥 · 장윤석 · 이상일 · 최봉홍 · 김상민 · 이강후 · 박성호 · 박윤옥 · 이우현 의원 발의)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장하나 · 김광진 · 김재윤 · 김상희 · 박민수 · 박주선 · 배재정 · 백재현 · 최민희 의원 발의)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김성주 · 유기홍 · 배재정 · 박혜자 · 박주선 · 강기정 · 진성준 · 김관영 · 장병완 · 김태년 · 김재윤 · 정진후 · 진선미 · 안규백 · 부좌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00)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박남춘 · 전병헌 · 변재일 · 박홍근 · 김성주 · 안민석 · 김현미 · 안규백 · 신학용 의원 발의)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박명재 · 안홍준 · 류지영 · 주호영 · 박창식 · 윤명희 · 이에리사 · 전하진 · 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6)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훈 · 장윤석 · 이채익 · 강은희 · 주호영 · 심학봉 · 김태흠 · 서용교 · 김을동 · 신성범 의원 발의)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김성곤 · 심상정 · 정진후 · 박원석 · 서기호 · 김현미 · 전순옥 · 홍영표 · 강동원 · 이목희 · 최민희 의원 발의)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윤후덕 · 신학용 · 추미애 · 배재정 · 이상직 · 김성곤 · 이목희 · 김승남 · 김상희 의원 발의)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나성린 · 서상기 · 홍철호 · 김장실 · 주호영 · 배덕광 · 양승조 · 강은희 · 류지영 · 황인자 · 이종훈 · 윤상현 · 박민식 의원 발의)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수성 의원 발의)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이상일 · 윤명희 · 서청원 · 김종태 · 이철우 · 신경림 · 홍철호 · 양승조 · 정병국 · 유승우 · 이한성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5)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박창식 · 문대성 · 김한표 · 이학재 · 박명재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안종범 · 김정록 · 정의화 의원 발의)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안민석 · 장하나 의원 발의)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배재정 · 이찬열 · 장하나 · 황주홍 · 이상직 · 김성곤 · 전순옥 · 홍의락 · 정세균 의원 발의)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
-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장하나 · 안민석 의원 발의)
-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
-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
- 41.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문현 · 정수성 의원 발의)
- 42.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김성찬 · 안홍준 · 손인춘 · 유승우 · 이재오 · 김장실 · 이강후 · 여상규 · 정병국 · 이채익 · 이현재 · 김성곤 · 김을동 · 윤관석 · 이한구 · 김춘진 · 백재현 · 임내현 · 안효대 · 장윤석 · 심윤조 · 함진규 · 정문현 · 서용교 · 김태호 · 김종태 · 길정우 · 이완영 · 이자스민 · 성완중 · 주영순 · 신학용 · 문정림 · 나성린 · 이학재 · 송광호 · 박인숙 · 조명철 · 한기호 · 황진하 · 이찬열 · 최원식 · 윤후덕 · 김정록 · 원유철 · 이명수 · 유성엽 · 김영우 · 이만우 · 박민식 · 서기호 · 이이재 · 김희국 · 안덕수 · 유기홍 · 박창식 · 김현숙 · 강은희 · 김희정 · 송영근 · 류지영 · 윤명희 · 조원진 · 김상민 · 정수성 · 조경태 · 김정훈 · 유승민 · 신경림 · 오병운 · 이종훈 · 김학용 · 정세균 · 김재경 · 서상기 · 유재중 · 김상훈 · 박성호 · 이진복 · 한선교 · 윤영석 · 이에리사 · 주호영 · 정우택 · 정진후 · 박윤옥 · 박주선 · 이군현 · 진성준 · 김동철 · 원혜영 · 홍지만 · 김광진 · 이우현 · 권성동 · 강석호 · 한명숙 · 박대동 · 양승조 · 문대성 · 이병석 의원 발의)
- 4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송영근 · 김을동 · 김장실 · 윤재옥 · 유일호 · 주영순 · 주호영 · 신성범 · 김희선 · 이한성 · 길정우 · 이에리사 · 이종훈 · 유재중 · 염동열 · 안홍준 · 신의진 · 강은희 · 류지영 의원 발의)
- 4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 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박병석 · 김상희 · 유인태 · 박혜자 · 이개호 · 김광진 · 정진후 · 배재정 · 유은혜 · 김기식 · 홍종학 · 남인순 · 윤관석 의원 발의)
-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세연 · 김장실 · 김태원 · 박인숙 · 손인춘 · 송영근 · 심재철 · 안홍준 · 李宰榮 · 정희수 · 함진규 의원 발의)
-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배기운 · 김우남 · 김춘진 · 장하나 · 김제남 · 윤후덕 · 이미경 · 이윤석 · 김기준 의원 발의)
-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유은혜 · 홍의락 · 박홍근 · 김승남 · 정진후 · 김상희 · 배재정 · 배기운 · 도종환 · 김태년 의원 발의)
-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이한성 · 김정록 · 정수성 · 박윤옥 · 홍지만 · 이명수 · 이강후 · 강기윤 · 박인숙 의원 발의)
-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 · 김광진 · 손인춘 · 조명철 · 김세연 · 박인숙 · 류지영 · 이운룡 · 이이재 · 김상훈 · 강은희 · 김성곤 · 남인순 · 정성호 · 홍문표 · 김종태 · 김동완 · 박대출 · 이현승 · 이채익 · 윤명희 · 김한표 · 이자스민 의원 발의)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서용교·신장용·백재현·강기정·조정식·김광진·이석현·이종걸·이원욱 의원 발의)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완구·문정림·이운룡·정희수·강기윤·함진규·김태원·김한표 의원 발의)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박주선·최규성·배기운·김춘진·박민수·이원욱·신기남·정세균·김성주·이상직 의원 발의)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진선미·유성엽·장하나·안민석·이찬열·김승남·남인순·정성호·박남춘·김재윤·김광진·전해철·최민희 의원 발의)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윤석·전순옥·안민석·정진후·임수경·최민희·김재윤·윤관석·정성호·김성곤·원혜영 의원 발의)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박명재·이우현·박성호·김희국·이장우·강석호·이현승·이현재·김진태·김기선·강기윤 의원 발의)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박주선·안민석·박홍근·배재정·박해자·유기홍·윤관석·정진후·도종환·유인태·조정식·유은혜·안홍준·문희상 의원 발의)

**5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이학재·이채익·김재경·박덕흠·조원진·안홍준·김희국·민현주·김도읍 의원 발의)

**58.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을동·서용교·김한표·김성찬·김민기·이우현·서상기·윤재옥·정병국·문대성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설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 절차에 따라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상정한 56건의 법률안이 모두 의원 발의 법률안으로서 대표발의 의원이 구두로 제안설명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두 제안설명 의사를 표시한 의원실이 없는 관계로 회의장 노트북에 정리된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및 20일 숙려기간 미경과로 별도로 의결한 3건의 제안설명서는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법안의 제안설명 및 주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전에 의결할 사항이 하나 있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위원장 설훈** 의사일정 제59항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오늘 상정한 5건의 제정법률안을 동 조항의 단서에 따라 공청회 생략의결을 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청회 생략의결 대상 법안 및 생략 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하여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배기운 · 전순옥 · 강창일 · 박남춘 · 장하나 · 정성호 · 이원욱 · 이윤석 · 강동원 의원 발의)(계속)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성완중 · 염동열 · 정희수 · 이명수 · 손인춘 · 권성동 · 김태흠 · 이인제 · 이우현 · 김성찬 · 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윤영석 · 주호영 · 강은희 · 홍지만 · 김한표 · 서상기 · 김세연 · 박윤옥 · 김종태 · 안홍준 · 김영우 · 윤명희 의원 발의)(계속)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 · 유기홍 · 이찬열 · 윤관석 · 정성호 · 김관영 · 이원욱 · 최원식 · 유성엽 · 유은혜 · 오영식 · 홍영표 · 부좌현 · 오제세 · 장하나 · 이목희 · 박홍근 · 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박홍근 · 배재정 · 김상희 · 정세균 · 유기홍 · 박혜자 · 윤관석 · 안민석 · 신학용 · 이학영 · 홍익표 · 진성준 · 신경민 · 김용익 · 김태년 · 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0)(계속)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안민석 · 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김태년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박창식 · 문대성 · 김한표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김정록 · 안종범 · 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 · 윤재옥 · 장윤석 · 이상일 · 최봉홍 · 김상민 · 이강후 · 박성호 · 박윤옥 · 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장하나 · 김광진 · 김재윤 · 김상희 · 박민수 · 박주선 · 배재정 · 백재현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김성주 · 유기홍 · 배재정 · 박혜자 · 박주선 · 강기정 · 진성준 · 김관영 · 장병완 · 김태년 · 김재윤 · 정진후 · 진선미 · 안규백 · 부좌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00)(계속)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박남춘 · 전병헌 · 변재일 · 박홍근 · 김성주 · 안민석 · 김현미 · 안규백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박명재 · 안홍준 · 류지영 · 주호영 · 박창식 · 윤명희 · 이에리사 · 전하진 · 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6)(계속)

-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훈 · 장윤석 · 이채익 · 강은희 · 주호영 · 심학봉 · 김태흠 · 서용교 · 김을동 · 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김성곤 · 심상정 · 정진후 · 박원석 · 서기호 · 김현미 · 전순옥 · 홍영표 · 강동원 · 이목희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윤후덕 · 신학용 · 추미애 · 배재정 · 이상직 · 김성곤 · 이목희 · 김승남 · 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나성린 · 서상기 · 홍철호 · 김장실 · 주호영 · 배덕광 · 양승조 · 강은희 · 류지영 · 황인자 · 이종훈 · 윤상현 · 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이상일 · 윤명희 · 서청원 · 김종태 · 이철우 · 신경림 · 홍철호 · 양승조 · 정병국 · 유승우 · 이한성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5)(계속)
-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 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박창식 · 문대성 · 김한표 · 이학재 · 박명재 · 이한성 · 박인숙 · 홍지만 · 정희수 · 안종범 · 김정록 · 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안민석 · 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배재정 · 이찬열 · 장하나 · 황주홍 · 이상직 · 김성곤 · 전순옥 · 홍의락 · 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장하나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41.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문현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42.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김성찬 · 안홍준 · 손인춘 · 유승우 · 이재오 · 김장실 · 이강후 · 여상규 · 정병국 · 이채익 · 이현재 · 김성곤 · 김을동 · 윤관석 · 이한구 · 김춘진 · 백재현 · 임내현 · 안효대 · 장윤석 · 심윤조 · 함진규 · 정문현 · 서용교 · 김태호 · 김종태 · 길정우 · 이완영 · 이자스민 · 성완중 · 주영순 · 신학용 · 문정림 · 나성린 · 이학재 · 송광호 · 박인숙 · 조명철 · 한기호 · 황진하 · 이찬열 · 최원식 · 윤후덕 · 김정록 · 원유철 · 이명수 · 유성엽 · 김영우 · 이만우 · 박민식 · 서기호 · 이이재 · 김희국 · 안덕수 · 유기홍 · 박창식 · 김현숙 · 강은희 · 김희정 · 송영근 · 류지영 · 윤명희 · 조원진 · 김상민 · 정수성 · 조경태 · 김정훈 · 유승민 · 신경림 · 오병윤 · 이종훈 · 김학용 · 정세균 · 김재경 · 서상기 · 유재중 · 김상훈 · 박성호 · 이진복 · 한선교 · 윤영석 · 이에리사 · 주호영 · 정우택 · 정진후 · 박윤옥 · 박주선 · 이근현 · 진성준 · 김동철 · 원혜영 · 홍지만 · 김광진 · 이우현 · 권성동 · 강석호 · 한명숙 · 박대동 · 양승조 · 문대성 · 이병석 의원 발의)(계속)

**4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송영근 · 김을동 · 김장실 · 윤재옥 · 유일호 · 주영순 · 주호영 · 신성범 · 김희선 · 이한성 · 길정우 · 이에리사 · 이종훈 · 유재중 · 엄동열 · 안홍준 · 신의진 · 강은희 · 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4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 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박병석 · 김상희 · 유인태 · 박혜자 · 이개호 · 김광진 · 정진후 · 배재정 ·

유은혜 · 김기식 · 홍종학 · 남인순 · 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세연 · 김장실 · 김태원 · 박인숙 · 손인춘 · 송영근 · 심재철 · 안홍준 · 李宰榮 · 정희수 · 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배기운 · 김우남 · 김춘진 · 장하나 · 김제남 · 윤후덕 · 이미경 · 이윤석 · 김기준 의원 발의)(계속)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유은혜 · 홍의락 · 박홍근 · 김승남 · 정진후 · 김상희 · 배재정 · 배기운 · 도종환 · 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이한성 · 김정록 · 정수성 · 박윤옥 · 홍지만 · 이명수 · 이강후 · 강기윤 · 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 · 김광진 · 손인춘 · 조명철 · 김세연 · 박인숙 · 류지영 · 이운룡 · 이이재 · 김상훈 · 강은희 · 김성곤 · 남인순 · 정성호 · 홍문표 · 김종태 · 김동완 · 박대출 · 이현승 · 이채익 · 윤명희 · 김한표 · 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서영교 · 신장용 · 백재현 · 강기정 · 조정식 · 김광진 · 이석현 · 이종걸 · 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이완구 · 문정림 · 이운룡 · 정희수 · 강기윤 · 함진규 · 김태원 · 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진선미 · 유성엽 · 장하나 · 안민석 · 이찬열 · 김승남 · 남인순 · 정성호 · 박남춘 · 김재윤 · 김광진 · 전해철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운석·전순옥·안민석·정진후·임수경·최민희·김재윤·윤관석·정성호·김성곤·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박명재·이우현·박성호·김희국·이장우·강석호·이현승·이현재·김진태·김기선·강기윤 의원 발의)(계속)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박주선·안민석·박홍근·배재정·박혜자·유기홍·윤관석·정진후·도종환·유인태·조정식·유은혜·안홍준·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5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신성범·이학재·이채익·김재경·박덕흠·조원진·안홍준·김희국·민현주·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58.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을동·서용교·김한표·김성찬·김민기·이우현·서상기·윤재옥·정병국·문대성 의원 발의)(계속)

(10시43분)

○**위원장 설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안전별로 유인물 형태로 회의장에 준비하여 왔으나 이후부터는 본회의와 같이 종이 없는 국회 실현 차원에서 회의장 노트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전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폴더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요약 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임진대입니다.

오늘 상정된 42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주요 검토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대표발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수학여행을 학교 밖 교육활동에 명확하게 포함하는 부분은 현행 규정에 수학여행을 포함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활동에 앞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 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을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습교육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교육을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활동 안전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부분은 안전교육과 학교시설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시설 보강을 위한 국가의 보조 등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국고로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시설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된 단체여행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높은 질의 프로그램 사용으로 안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개정 이후 인증제도가 정착되기까지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전사고관리지침을 보급하도록 하고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부분은 매뉴얼 준수를 통한 사고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안전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

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은 조속한 사회 복귀나 정상적인 생활을 돕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부좌현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김희정 의원님 대표발의안 중 대학의 공제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포함 여부를 법체계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소방서장 등의 안전점검·확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관석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안전교육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은희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공제료 미납에 대해 공제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공제회는 행정권한이 없으므로 공제회 설립자인 교육감이나 장관에게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조명철 의원님 대표발의 학교 교육활동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내용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중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박혜자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안전관리의 대상을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김현숙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그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님 대표발의안 등 6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건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교육 강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책무를 규정하는 6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라는 교육기본법의 다른 규정과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혜자 의원님 대표발의안 등 7건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안전계획이나 대책의 수립·시행 관련 내용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도 규정되고 있는데 안전계획에 대해 어느 쪽 법에 규정하든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의무 주체에게는 효과가 동일하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 수요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정의화 의원님 대표발의안 인성교육진흥법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혁 논의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정직·신뢰·배려 등 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며, 학생이 행복한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 위주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제정안의 입법 조치는 필요합니다.

다음, 이상일 의원님 대표발의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박홍근 의원님 대표발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 대학의 정원 외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8항까지의 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4건의 법률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건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조명철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자동차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미등록 영업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야영장업 뿐만 아니라 일반야영장업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야영장에 대한 등급제도의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야영장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한표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 인솔 금지,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 안전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교육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 여행자의 불편 초래 및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윤조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관광 종사원 자격 취득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관광 종사원 등록자 중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박홍근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신고체육시설업에 스포츠클럽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거의 모든 종목에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업의 시설기준 등을 이 법에 따라 규정하려면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별문제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유대운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와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은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체육시설까지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

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신고체육시설업에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이노근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번지점프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업종들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하더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설훈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문체부장관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및 체육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매 5년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업무 위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성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경과조치를 적정한 기간으로 연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수상레저안전법 및 항공법 등 개별법 적용을 받는 레저스포츠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 및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선은 육상 레저스포츠를 중점 관리·감독 대상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상 및 해양 레저스포츠까지 포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덕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유기홍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작년 8월에 이 문제로 잠시나마 굉장히 소란스럽고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윤희 씨 관련해서 문체부 국·과장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직접 교체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장관이 답변을 얼핏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보고서의 존재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요, 지금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일단……

○**윤관석 위원** 처음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 사건도 처음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관석 위원** 아니,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핵심 국장이 경질됐던 사안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윤관석 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디 부서에서 조사하고 감사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어떤 체육……

○**윤관석 위원** 지금 승마협회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감사실에서 했거나 혹은 체육국에서 진행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윤관석 위원** 감사가 있었는지 사실조차도 모르신다, 장관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오늘 법안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오는데 아침에 주요 일간지에 1면 톱으로 이 사안이 보도가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언론 보도는 봤습

니다.

○**윤관석 위원** 보도는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 단발성도 아니고 이미 며칠 전부터 ‘국정농단 비선 실세’ 해서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어제 국회 예산 합의한 것보다 오늘 언론 보면 그게 더 많이 나왔어요, 정윤희 씨나 박지만 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건 유출 사건까지 해 가지고. 대통령도 언급했던 사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론 방향은 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관이 국회에 오시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부하고 관련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고요, 사실. 그리고 체육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서 그래서……

○**윤관석 위원** 아니, 오늘이 처음인데 이런 사안이 계속되고 있었고 현재 국정외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한 사안이 오늘 아침에 관련 부처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봐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저 같으면 몰랐다면 바로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조사를 했던 것이 있고 보고를 청와대에서 한 적이 있느냐, 경질은 어떤 과정으로 됐느냐, 어디가 담당을 주도했느냐, 이런 것 당연히 알아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까지……

○**윤관석 위원** 업무를 그렇게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오늘 아침에 잠깐…… 원래 오늘 법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위주로다가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론 보도가 이런 게 나온 게 있길래 체육국장한테 한번 확인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시는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관석 위원** 오시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나이브한 태도이시고.

중요한 사안이지요, 이게 지금. ‘국정농단한 비

선 실세',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고 작년에 이미 뜨거운 사안이 됐던 건데 그게 언론에 아침에 나왔으면…… 다 일찍 나오시지 않습니까, 장관도 새벽에 다 일어나시고? 언론 보셨으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것은 언론의 보도고요.

○윤관석 위원 아니, 어떻든 언론의 보도라는데 국민적 관심이기도 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윤관석 위원 이 답변들…… 나중에 이 부분은 지금 단순히 문체부에 있어서 승마협회 조사한 것으로 국·과장이 경질된 사안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이?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나중에 다 함께 확인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전임 장관 때 일이나……

○윤관석 위원 전임 장관 때 일이라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전임 장관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윤관석 위원 보고서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윤관석 위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개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일부 인사들께서는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전체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했고 요청을 했는데 되지 않고 있다 지금 뒤늦게 터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 조사 경위 또 경질됐던 과정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국회에 보고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윤관석 위원 올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이 23%만이 구조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학여행 안전지침'을 내놓았는데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학생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법 3개의 개정법률안을 제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육기본법인데,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관련해서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우여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육기본법에 집어넣고 또 학교 밖의 교육활동 및 안전한 교육활동 마련을 위한 방안도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도 앞으로 교육활동이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활동하는 영역도 그렇고—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희들 부에서도 법안을 검토하고 취지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또한 이를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전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법안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내용을 판단하시고 또 조속한 법안심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교육기본법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전반적인 동의를 포함합니다.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정도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수능 피해 지원법안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수능 오류에 대해서, 피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위원 작년에 이렇게 1년간 끝나가 지금 판결이 나왔고 올해 또 2개의 오류가 발견되

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혼란과 고통은 오로지 수험생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건의 2014학년도 수능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고 본회의의 조속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2년 연속해서 수능 오류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차제에 이에 대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적 여러 지혜를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겨울 한파보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매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련한 것이 보도가 된 바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련 자료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상일 국장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자리 비웠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예.

○**윤관석 위원** 작년 여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문체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했지요, 승마협회 그것 관해서 관계없다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것도 이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윤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유기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사실은 제가 오후에 김종덕 장관

이 보고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까 답변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김종덕 장관의 답변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문체부장관은 자연인 김종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연속성을 갖는 문체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계속 오불관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 뜨거운 문제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다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임자 시절의 일이라는 얘기만 강조해서는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법안 상정하는 날이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날의 주된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상임위에서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오늘 법안 상정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다른 주요 현안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력 언론지가 1면 톱으로 여러 개 면에 걸쳐서 보도한 이 내용을 작년에 감사가 있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도를 넘은 무책임과 무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임자 일이면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책임 안 져도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파악조차도 못 하고 왔다는 것은 장관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후 의사진행에 있어서 저는 김종덕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아까 본 위원장이 이 문제는 사안 자체가 아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리고 바른 답변을 하시라는 뜻에서 오후에 답변할 기회를 드렸으니까, 그때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홍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언을 정리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위원 오늘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마 학교안전에 관한 관심이 많이 뜨겁고 실제 학교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현행에도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법률안들이 상정되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서는 특별히,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게 한 65% 정도 되는데요, 실제 보건교사만이 학교안전을 담당해서 특히 교육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시설 안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은희 위원 실제 안전교육을 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더불어 안전교육을 담당할 시수 확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게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도 아마,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 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살펴보니 유치원에서 공제회에 많이 들지 않는 경우, 혹은 공제회에 가입했지만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실제 공제회비는 납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이것을 공제회가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조치하기 어렵지만 행정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가능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 부분 보완해서 통과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같은 생각입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이상일 의원님과 박홍근 의원께서 발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긴급히 입법을 해 주어야만이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지금 이 법이 마련되어서 1차 문제가 된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는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수능출제개선위원회 만들어서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실제 수능을 어떤 체계로 출제를 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부 사항이라고 답변서를 전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 관련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수능이 출제되는지 기본 시스템에 대한 정도의 보고는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2004년도 수능에서 그때 오류가 발생되어서 출제위원들이 반복 참여한다든가 교수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대안이 마련되었고 교육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가 국무총리실이고 교육부다 보니까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제 긴밀하게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원활한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실상 이 출제와 점검과 채점은 거의 완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기관도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관으로서 그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출제위원들의 출제에 대해서 검토위원들이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어서 이런 오류가 한두 번도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반복이 되는지도 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만약에 안 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산하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문제인지 아니면 출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이런 긴급한 법안까지 발의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출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출제와 검토위원들이 완전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전까지 이러한 출제와 검토 부분에 대한 체제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로서는 마칠까 합니다.

**○강은희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문체부 장관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이 7건 상정이 되고요, 또 한선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 기준에 관련된 법률안도 같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전부 다 크게 보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료에도 제대로 된 기본적인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체육시설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안전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설이 너무 많아서 대대적인 점검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통계 자체를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상정된 법들은 이들 기관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강은희 위원** 그래서 일원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일원화했을 때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곳에만 딱 맡겨져서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법 자체의 개정은 필요하고 일원화 외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먼저 사회부총리님께 짧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제 한 120일 가까이 돼 갑니다.

**○배재정 위원** 그동안 지켜보시니까 교육부 직원들 사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일할 분위기 좀 만들어져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도 그 점을 우려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적으로 좀 과로,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다라는 열정만큼은 살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문화부 장관님께도 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부 직원들, 지금 사기충천해서 열심히 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 판단에는 인사가 최근에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는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관님들부터 소신행정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 분들도 그렇게 맡은 임무를 아무런 한계 없이 열심히 하실 수 있는지……

오늘 문화부 장관님께서 사실 상임위에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아침 조간에 난 기사를 보시고 어떤 면에서는 당혹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임 장관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인사 지시하고 문책하고 경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유진룡 전 장관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경질되신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교육부든 아니면 문화부든 행정 관료들께서 열심히, 소신 있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전임 장관 일이 아니고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인사 지시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배 위원님, 인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동안에 제가 한 인사들은 100% 제가 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장관의 몫입니다. 그건 그간에 여러 차례 정부에서 밝혀온 바 있듯이 문체부와 관련된 인사는, 최근에 한 인사들은 다 제가 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전임 장관 때까지는 청와대가 좌지우지했고 김 장관님부터는 장관님께서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재정 위원**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국감 때도 그렇고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도왔던 윤중승 씨(자니 윤 씨) 관광공사 감사되셨고

요, 많은 대선 공신들이 낙하산 인사로 사실은 발령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낙하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한다기보다는 적절하신 분이 대선 때 공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신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이 낙하산으로 왔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와대의 이런 식의 개입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적절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문화부의 국·과장님들은 제대로 일을 한번 해 보시려고 했었는데 그게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다 경질되고 잘려 나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들어서자마자 사실 대대적인 인사 개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장관님,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으셔서 문화부 인사 개편을 그렇게 들어오시자마자 하셨습니까? 오시기도 전에 문화부 전부 다 조직을 장악하고 계시고 문화부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시작하신 겁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똑딱똑딱해서 조직 개편까지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장관님 소신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파악을 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여러 경로라는 게…… 장관께서 기본적인 기간도 가지시기 전에 조직 개편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경로라는 것이 어떤 경로입니까? 청와대 경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청와대로부터는 한번도 전화조차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감사원 감사와 부산시 감사 동시에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이 역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거라는 보고는 언제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부산시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배재정 위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문화부가 영화제와 관련한 총괄 부서이신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부산시의 감사는 모르고 계셨고 감사원 감사는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하고 계셨고,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영화제에 관련된 감사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대로의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물론 업무영역 있지요.

그렇지만 주무 부서 아닙니까, 문화부가.

현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다이빙벨’ 상영 이후로 표적 감사한다는 지적이 사실상 많습니니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도 감사하고 감사원도 감사하고, 이게 과연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감사가 아니냐,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부산영화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 어떤 부분을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배재정 위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영화계 좌파를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영화계 감사를 시행해서 감사 후 실제로 영화제 지원 예산이 42억에서 35억 원으로 7억 원 감액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바라보는 지역의, 그리고 영화계의 우려가 깊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천명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전폭적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어떤 일상적인 그런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거고요.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감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할 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황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이 2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우리 학생들이 입었던 피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모든 피해 보상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어떠한 보상과 책임을 질 때에는 또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법안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부의 생각입니다.

○**배재정 위원** 저는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하향 지원한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수능에서 두 문제나 정답 인정을 복수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나 언론의 어떤 태도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EBS 쪽의 어떤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다는 식의 보도가 횡행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실제로 제가 이 패널까지 준비했습니다마는 EBS 문제를 가져온 것은 맞는데 사실은 내용을 조금씩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부나 평가원에서 책임을 사실상 EBS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마치 그 문제를 가져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식의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엉뚱하게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안 된다는 말씀을

또 거기에 덧붙여서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위원장 설훈 예, 염동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교문위에 제출된 법률안 현황, 제출일이 명기된 자료를 1시 반까지 저희 방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덧붙여서 안전 상정에 대한 국회법이라든가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관한 것도 함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시 반까지 제 방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행정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어서 신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의진 위원 새누리당 신의진입니다.

오늘 교문위에 상정되는 법안은 주로 학교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그 내용이 학교안전의 날 제정, 학생안전교육 실시 등의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에 더해 교육부장관께 어린이 전기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학생들의 감전사고가 400명을 넘었고 이 중 10세 미만 어린이 감전사고 사상자 수가 335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기기술자 다음으로 높습니다. 어린이 감전사고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어린이에 대한 전기안전교육까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오늘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받겠습니다.

○신의진 위원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감전사고를 당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전기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마 교과과정 범위 정도일 겁니다.

○신의진 위원 실제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교통안전, 가스안전 등 다른 안전교육들은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기안전에 대한 교육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의 안전 관련 내용 중에서 전기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1·2학년 교과서에 문어발식 전기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감전사고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없었습니다. 3학년 이상 교과에는 아예 그냥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한 이런 어떤 교육의 부족 외에도 현행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역시 전기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그 사항을 보강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점에서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의진 위원 아울러 어린이 전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전기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요인에 대한 판별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홍보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실에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신의진 위원 다음은 교육부장관님께 학생들의 마음건강, 즉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오늘 학교 전체적인 안전 법안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 정신건강 문제의 가장 심각한 점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조금씩 준다고는 하나 사실 계속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에 발표가 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방대책 중에서 상담 여건 개선이 10.8%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장관님?

아니면 다른 분이,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이진석** 학생복지안전관 이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한 2000여 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배치율이 제일 높습니다.

○**신의진 위원** 중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이진석** 예.

○**신의진 위원** 2013년 기준으로는 1만 1360개교에 1581명으로 13.9%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그 배치율이 14%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학교 내의 상담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그 문제가,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학생당으로 비추어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신의진 위원** 저는 보건교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생 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건교사 역시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학교 보건교사들 말에 의하면 보건실에 자주 오는 학생들 중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학생이 많다고 할 정도로, 보건교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또 잘 관리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인데 이 보건교사 배치율도 2014년 65%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100%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부족한 문제 외에도 현행법상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신의진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의했느냐 하면,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 확충 또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의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시급한 이 법안들이 아직까지도 교문위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 상태로 한 번도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이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보건법 개정안들은 내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제가 발의한 법안도 함께 병합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같이 다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의진 위원** 여야 간사님들께서도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제가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신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접니다.

○**위원장 설훈** 아는데……

○**정진후 위원** 정진후 위원입니다.

○**유기홍 위원** 왜 순서가 바뀌었지요?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예.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법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학교안전교육, 그다음에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한 구제인데 학교안전사고 관련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실화를 기할 것이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한다 하면 특히 재량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폭력·학교폭력·각종재난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해 왔고, 이것이 사실상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나 해병대 캠프 그리고 세월호 이런 데서도 보듯이 안전교육이 내실화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인데 장관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하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부분 중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할 수 있다’로도 완화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바로 내실화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의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요.

그다음에 지금 법률안 나온 안 중에 일일이 의원님들의, 대표발의자 성함을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서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선정 기준이라도 정확하게 마련되어서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무대책 상태에서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떻다는 것을 장관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임의 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지 교육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후 위원 두 번째,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이 수능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단순히 폐쇄적인 출제시스템만의 문제인가? 저는 처음부터 다, 수능의 어떤 자격고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육부가 위탁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이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수능 체제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입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너무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능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이 또 영구불변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점검해

서 수능 체제를 다른 형태로 개편하는 문제까지를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배재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교육부의 이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안 일하다고 생각해요.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향 지원자에 대한 문제는 아예 쪽 빠져 있거든요. 그대 놓고 책임이라는 것은 위탁받았던 교육과정평가원장 한 분 사퇴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면하는 것인 양 이렇게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내용 있는 책임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장관님께 말씀드리면 어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처리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방교부세법 때부터 그것이 소방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정진후 위원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위원 제가 아침에도 교육부에 연락을 하라고 그랬고, 제가 재정부에도 확인했는데 교부금이 1150억이 감액되었어요, 사실상. 국세 세입이 감액된 것도 이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교부금법을 함께 개정할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150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우리가 누리과정 우회 증액해서 5064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3914억 증액한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 지원이나 지방채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형태로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교육부가 부담하려고 했던 지원액, 이에 상응하는 노력은 이후에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상정해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의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빨리해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증가 예상분보다 1150억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이것이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저도 자료 요청과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언론 보도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러면 이 언론 보도가 전혀 터무니없는 보도라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확인 안 된 보도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진후 위원** 확인 안 된 것과 “그것은 언론 보도다”라고 이렇게 지칭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감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래서 오후에 보고하실 때는 승마협회 조사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보고는 누구에게 했는지 경위와 보고자까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체육국장과 체육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된 경위, 인사 발령받은 지 몇 개월 만에 그렇게 급작스러운 인사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해서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정진후 위원** 오후에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보고서 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정진후 위원** 보고서 존재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까,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금 전에 질의를 받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정진후 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이나 계시면 끈장 연락해 보셔서……

그런 보고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

답변하실 수 없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오후에 이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서울 서초갑의 새누리당 김희선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날 결국 자사고와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제소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희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장관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하고 관련해서 물론 서울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부가 그동안에 취한 그 태도도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장관님께 그때 상임위에서도 결국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직권 취소 또 대법원 제소, 이렇게 가는 과정 아니냐……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도록, 더군다나 교육부장관님이 이제 사회부총리로 격상되신 마당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잘 풀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도 드렸고요. 이렇게 가는 수순은 다 예정된 수순이었고 그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거든요, 뻔한 방법이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결국 법으로 갔을 때 그동안에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혼란, 불안함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제 생각대로 법제처에서 거기에 따른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가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았고,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회답 내용의 요지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그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 이렇게 해서 동의·부동의에……

○**김희선 위원**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서울교육청에 보내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서울교육청이 명확히 또 나름대로 하겠노라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제가 그 교육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법제처 해석이 대법원 결정과 같은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청을 사실상 기속하는 유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런데 장관님도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국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체포특권이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국회하고 또 교육 관계자들을 학교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딱 두 군데거든요, 정치권과 교육계.

그게 무슨 취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정치권에 생긴 문제라든지 교육계에서 생긴 문제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정치권에서도 특 하면 서로 고소·고발하고 하는 것, 이것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부총리로서 중간의 거중 역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관이었다면 교육감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그 결론을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위원** 거기에 한번 맡겨 보자, 그래서 만약에 현행법 해석이 교육부장관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나올 경우에 굳이 대법원에 가서 1년 동안—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기다릴 것 뭐 있느냐, 거기에다 한번 서로 맡겨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하신다 하든지 해서……

그러면 사실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도 공약을 하신 분인데 빠져나가기 힘들, 그것을 지키지 않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서 뭔가 제3의 안을 내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십사라고 제가 유권해석을 얘기한 거지

제가 그 해석 결과를 몰라서 장관님한테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법 해석상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 가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괜히 시간만 끌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기간 동안의 혼란,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냐 이거지요.

교육감도 지금 제 생각대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하면 조희연 교육감은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로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결국 대법원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도 동감이고, 다만 공약사항이고 입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김희선 위원** 그리고 다행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문제됐던 학교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별 요동이 없습니다.

○**김희선 위원** 별 큰 그게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갈등요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경륜도 많으시고 이런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과거 관료 출신 장관하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선 위원** 수능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이렇게 출제 오류라든지 또 금년도 수능도 몰수능이다, 변별력이 없다,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근본적으로 과연 이 수능제도…… 그동안에 수능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나 방안들이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과 같은 형식의 수능제도가 과연 맞느냐, 제가 여기저기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관식도 넣는 것은 어떠냐 또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어떠냐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치르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두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류가 매년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자, 이걸 내년 3월까지 하고요.

그 외에 수능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귀 기울이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좀 넓게, 많은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려고 하고 또 문제점이 근본에서부터—출발에서부터 어떻게 변화됐는가, 시대상황과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종적인 안을 중장기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단계마다 우리 상임위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김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교육부장관님, 부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대출 위원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 성적 정정에 따른 피해 학생 법률안이 지금 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 검토하셨습

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법안이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향하고 같지요,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하는 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대출 위원 구제하는 것이고 또한 대상을 전원으로 하는 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확정되는 학생 전원을 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교육부에 질의서를 하나 보낸 게 있는데, 군 입대나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학생 본인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대출 위원 제가 받아 본 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기존 연락처 및 출신 고교를 통한 연락, 행정절차법상 송달 등 충실히 안내해서 군 입대 학생들도 2015년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대학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5년 등록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금이 모자란단든지 학교를 다닐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등록을 못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휴학을 해 놓고. 이런 학생들 가운데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하지 못하고 휴학을 한 학생도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포함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 수치는, 규모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휴학 중인 학생이 입학금이 없어서 등록을 포기하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선 각 대학의 학사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가급적이면 입학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대출 위원 입학할 전제로 한다는 말은 등록이 되어야 가능한데 등록을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학비가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하

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이것은 등록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든지 아니면 등록금 일정 비율을 대출 지원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해서 피해자 구제가 전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관으로서는 일단 입학 문제를 해결하고 예컨대 군 복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대책이 지금 현행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최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문화부장관님, 아까 오전에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대한승마협회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체육국장이라든지 체육 담당자들, 실무 관련한 그런 내용에 관련된 보고서 찾아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보고서를 찾았는데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인사 조치가 된 것은 전임 장관 때입니까, 지금 장관님이 재직하실 때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임 장관……

○박대출 위원 전임 장관 때의 일이지요? 유진룡 전 장관 때 있었던 인사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장관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다시 한 번……

지난 11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수능 출제 방식 재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 가지고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운영체제개선위원회라는 것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개선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만

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한이 내년 3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능이라는 게 1994년도에 되어 갖고 22년 동안 지속된 제도인데 석 달 동안 이게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은 1단계로서 오류가 지금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오류 발생 원인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하고 근본적인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좀 더 연구해야 됩니다.

○박대출 위원 즉 수능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수능 문제의 오류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수능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방안,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수능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대학 입학수학능력시험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수학능력시험, 수학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게 이 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일 건데 오늘 아침에 각 조간신문에도 다 보도가 됐지만,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영어·수학이 너무 쉬워 가지고 지금 만점자가 이만 몇 명인지, 제가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삼만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치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대출 위원 만점자가 3%대던데 이렇게 되면 변별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등급이, 만점자가 3% 이상 되어 버리면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상대평가할 때는 4%를 1등급으로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맞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요, 오히려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학능력 자체를 등급화하는 것은 난이도를 자꾸 어렵게 했다가 쉽게 했다 할 것이 아니라 난이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학력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EBS와

수능과의 연계 문제, 연계율을 70%로 올린다는 지 이런 단편적인 접근도 분명히 개선해야 될 문제겠지만 저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능 횡수를 늘리는 개념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3년 동안 보는 기말고사·중간고사, 이런 형태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대출 위원 그것을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1년에 여섯 번 내지 열두 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급한 오류 발생이나 이런 것은 내년 시험에 또 나타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문제점의 대책을 세우고요, 지금 수능제도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가 시대에 맞거나 또 현재의 여러 가지 학습 여건에 맞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하면서 이것은 제도가 확정이 되더라도 3년 후에 시행하는 대학입시에 대한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박대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배재정입니다.

오전에 문화부장관께 오후가 되면 논란이 되었던 정권 실세의 조사 내지 감사와 관련한 청와대 인사 개입 관련으로 보고를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먼저 보고를 좀 받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다음은 안민석 위원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배재정 위원 말씀대로 오전에 문체부장관이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문체부장관이 파악한 내용을 지금 밝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장관께서 하신 일이지는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그 당시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 비리와 관련된 일을 갖고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인재를 활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에 따른 보복성 인사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다가 제가 지금 보고 받고 있고요.

또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작년 5월에 태권도 선수 아버지가 자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체육계 비리나 부조리에 관련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했고 또 체육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 감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군데만 따로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한 4개월에 걸쳐 가지고 한 2000군데 넘게 일부는 서면으로 감사했고 일부는 직접 감사를 했고요, 그런 감사를 했던 것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만 보면 그때 당시 감사에 대한, 승마협회에 관련된 그것도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은 아마 전체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장관 답변이 너무 상식적이네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 보도된 내용과 비추어 볼 때 하나 마나 한 답변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제가……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위원장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이게 그때 정기 인사가 아니었잖아요? 아주 이례적으로 국·과장을 동시에 교체한 인사였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 나온 대로의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이 두 분의 다른 문제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었잖아요. 둘 중의 하나이지 않겠

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태년 위원 예.

○유기홍 위원 그 답변 듣기 전에 저도 관련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지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지금 질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유기홍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할게요.

○박대출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님?

○유기홍 위원 위원장한테 질문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설훈 그다음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우선 오전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장관 답변은 정말 남의 얘기 하듯이 그리고 문체부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얘기 하듯이 먼 과거에 어떤……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모든 경기단체 비리나 이것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했던 그 자료가 아니고 5월 달에 청와대 교문수석실 하명에 의해서 체육정책과장이 승마협회에 가서 감사했던 그 보고서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쥐야지요.

그런데 장관이 그런 감사가 있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장관 자격 없습니다. 엉뚱한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유수의 언론사가 1면 톱으로 보도한 것이면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은 언론 보도고요.”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려까지 제기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한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십시오. 5월 달에 이게 다 정윤희 씨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김천경찰서에서 갑자기 판정 가지고 조사하는 이례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의가 일어나니까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승마협

회 감사 지시가 왔고 체육정책과장이 가서 그 당시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장관께서 과연 지금 한예종하고 박물관에 가 있는 전 국장, 전 과장 그분들하고 통화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저희 위원실에서 연락을 했는데 둘 다 행방불명이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이 업무상 전화하는 것을 지금 안 받고 도망, 행방불명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세종시 출장 갔다고 그러는데 전화 안 받아요. 또 한 사람은 핸드폰 놓고 외출했다는 게 답변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말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답변 듣자고 아까 여러 분이 다 의사진행발언해 가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장관께서 지금 저 답변을 하시기까지 과연 청와대 교문수석실하고 통화해서 확인했는지 전 국장, 전 과장하고 당시 경위에 대해서 장관이 확인했는지, 장관이든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유진룡 전 장관이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감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자료가 아닌 엉뚱한 자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장관이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강력히 경고해 주시고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설훈 본 위원장이 오전에 처음 질의가 나왔을 때 이 답변을 오후로 넘긴 이유는 답변할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지금 유기홍 위원이 얘기한 이런저런 내용들,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점심 먹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치를 하고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는 것인지 아예 조치를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부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기를 뒤흔드는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문제에 임하면서 답변도 성실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성실하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자신이 그 문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장관으로서 진행된 과거의 내용들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파악한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해결책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범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설훈 신성범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안민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마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가지고 장관님께 오후로 답변을 좀 미루도록 했고,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많습시다마는 발언은 자체하고……

다만 장관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얼버무리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정확치가 않아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실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장관께서 알고 계시고 파악하신 바를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서로가 핀트가 어긋난다고 그럴까요, 시각차가 너무 커서 하나하나를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확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지금……

○안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왜냐하면 장관님 답변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지난봄에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를 했을 때는 본 위원도 사실 내용의 한 절반 정도는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정부질문을 했고,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차마 그랬겠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론 취재가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와 여당 위원들이 아주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하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그냥 평범한 개인의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조직적으로 도표까지 그려 가지고 반박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 그다음에 문체부 차관이 두 번씩이나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 그랬어요.

이게 끝나나 싶었는데 오늘 어느 언론에서 이것을 다 추적해 가지고 기사가 났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장관님은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모르실 거예요. 보고받고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안민석 위원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분은 김종 제2차관이에요. 그분도 작년에 인사 경질 이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일을 가장 실제적으로 다 아는 분은 김종 2차관인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야지 오늘 상임위가 될 텐데,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보니까, 지금 일본 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안민석 위원 이 출장이 언제 계획됐어요? 장관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9월 말에 계획된 겁니다.

○안민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획서를 보면 국장이 가는 행사예요. 왜 국장이 가는 행사를 차관이 지금 갔습니까?

차관은 이 언론사 취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오늘 아침에 이 언론 기사 난다는 그 정도, 제2차관이면 언론 담당하는 차관인데 모니터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출행량을 일별로 친 겁니다, 이 상임위 피하려고.

뒤에 누구세요, 누구세요?

9월 달에는 여기 국장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양국 정부 관광국장급을 대표로 개최되는 회의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월 달, 그저께까지 국장이 가기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임위가 열리고 모 신문사에서 이 보도가 특종으로 나니까, 난다는 사실을 제2차관 정도면 언론 담당하는 차관이었으니까, 그 취재가 쭉 지난 며칠 동안 진행되고 있었고 언제 보도가 나는지 그 정도는 모니터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이라는 것 파악하고서 어제 오후에 출행랑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위원님……  
**○안민석 위원** 해명 듣기 싫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민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서로 이야기 하자고요. 이 문서에는 국장이 가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차관이 참석한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원래 제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직제가 개편돼서 이제 관광이 2차관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2차관이 저 대신 참석하신 겁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서로 봐주기 해명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민석 위원** 저는 문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문서 보세요. 이것은 양 국가의 국장급 회의예요.  
 이것을 1차관이 가기로 했는데 2차관이 갔다 그런 해명이, 뭐 초등학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오늘 상임위가 열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고 아주 우연의 일치로 제2차관이, 정윤희 씨 딸의 승마 의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두 번씩이나 기자회견을 했던 제2차관이 일본에 간 것은 우연의 일치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위원님, 상임위 개최는 어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위원** 아니, 우연의 일치지요? 우연의

일치로 오늘 일본 갔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세요.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본 위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출행랑친 것으로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문젠데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 하나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지난 5월 달에 문체부가 지시해 가지고 승마협회 보고서 작성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그게 저희……  
**○안민석 위원** 그것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오전 동안에 그것 달라고 그래서 시간 있었잖아요?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안민석 위원** 승마협회 조사보고서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아니요.  
 승마협회 조사보고서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 상임위 오늘은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체부가 작성한 그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그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지 않는데 오늘 이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그리고 양당 간사님께 요청합니다.  
 이 승마협회 조사보고서 이것을 제출하고서, 상임위를 속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설훈** 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선 김종 차관이 언제 귀국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위원장 설훈** 오늘 오후에.  
 오후 몇 시 정도 도착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희범** 6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6시 반.  
 밤 12시까지 하면 회의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좌우지간 그 보고서는 있습니까, 승마 관계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그런 보고서는 없고요, 1월 달에 최종 감사결과 발표한 그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설훈 감사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설훈 그것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것은 지금 여기 갖고 왔습니다.

○유기홍 위원 장관님, 그 당시 청와대에 불러가서 조사했던, 진 과장하고 통화해서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 국장한테 그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누가 대답해 보세요.

그런 보고서 있는지 없는지 누가 누구한테 확인했어?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체육국장입니다.

○유기홍 위원 전임자들과 통화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통화했습니다. 오전에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뭐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오전에 통화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통화가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유기홍 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런 보고서, 감사한 것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한 바는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파악은 했는데 보고서는 작성 안 했다? 참네……

○김태년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안민석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기홍 위원 아니, 지금 위원들 상대로 장난해요? 파악은 했는데 보고서는 작성 안 했다고?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태년 위원 파악했는데 보고서를 작성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배재정 위원 그러면 파악은 왜 했습니까?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정회하시지요.

○유기홍 위원 질의로 합시다.

○위원장 설훈 정회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안민석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승마협회 조사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보고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국장님도 ‘승마협회 조사보고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그 담당 과장한테.

○안민석 위원 그 과장이 누구니까, 진 과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진재수 과장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진 과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안민석 위원 나중에…… 이 진실도 봄에 문제 제기해서 여름, 가을, 겨울 되니까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더 큰 화를 불러냅니다.

제가 구해서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4월 달에 제일 처음에 승마협회 비리를 본회의 질문에서 합니다. 이례적으로 어찌된 일인지, 저는 한 사인의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뿐인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가 나서서 반박 기자회견을 해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지요.

그 반박 기자회견을 보면, 저의 요지 중의 하나가 “살생부가 있고, 그 살생부에 의해서 승마

협회 집행부가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살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이게 살생부예요, 이게. 박원오라는 사람이 쓴 살생부예요. 박원오는 승마협회에서 정윤희의 측근이에요.

왜 이것을 정부가 이 살생부가 존재하는데 애써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윤희 씨 편을 드는 겁니까?

자, 정부가 살생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살생부에 있던 당시의 승마협회 임원들이 국회에 와 가지고 “특정인들이, 특정 세력이 우리에게 시·도협회장을 관두라고 그랬다. 위의 큰 선에서 오더가 왔다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분들이, 살생부 당사자들이. 이분들이 할 일 없어 가지고……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이 기자회견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또 다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해요. 그분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부당한 의혹 제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이 두 번에 걸친 정부의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분이 김종 차관이에요. 유진룡 장관은 이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윤희 세력한테 유진룡 장관이 미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차관이었던 조현재 차관도 김종 차관한테 이것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조현재 차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체육대학 총장임명권 지금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국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정윤희 씨 딸에게 준우승 주었다고 점수를 낮게 준 심판들이 줄줄이 상주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형사들도 ‘자기들이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위가 어디냐?’ ‘청와대다.’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명—제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그 지시로 하는 거다.’

그런데 조사를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심판들이 판정 잘못해 가지고 은메달 땀어요. 그렇다고 국제경찰 인터폴에 신고해 가지고 올림픽 심판들 인터폴에서 다 조사합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해방 이후에 심판들을 경찰서에서 점수 잘못 주었다고 조사를 한 사례가 없어요. 국가가 이러면 되겠어요? 심판위원장 사퇴시켰어요. 국가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이 일을 누가 다 했느냐? 정윤희 씨가 했다 이겁니다, 문고리 3인방의 힘을 지렛대로 이용해 가지고. 이것 승마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새삼 새로 조사한 게 없어요. 승마인들이 조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형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들려주고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 체육 담당 행정관하고 담당 노태강 국장하고 진 과장하고 딱 경질시킨 것 아닙니까? 왜 경질시켰느냐? 승마협회 조사하라고 했는데 조사해서 살생부 이 명단들,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보고서가 올라온 것은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정윤희 측근인 박원오도 문제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청와대가 봤을 때 ‘애들이 정말 뭐를 모르네’, 그래서 다 경질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김종 차관 체제로 다 진영이 다시 세팅됐어요.

우 국장님, 일어나 보세요.

당시 해외연수 중이셨지요, 연수 중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작년 8월 달에 연수를 나갔습니다.

○안민석 위원 연수 중에 들어오신 거지요? 임기 다 안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맞습니다.

○안민석 위원 저분은 김종 차관의 박사과정 제자예요. 김종 차관이 들어오면서 밀어붙이기 하겠다고 해서 자기 라인으로 다 세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분 중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분은 김종 차관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진실이 오늘 기사가 나왔고, 그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그 차관이 없다 이겁니다. 땀땀하면 어제 일본 출장이 두 달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여기에서 해명을 해야지요.

제 얘기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그 보고 받기로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셨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명, 정부 측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언론 보도가, 제가 그전의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 내용하고 뭔가 새로운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나온 것인지 그런 내용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는 4월 8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입니다, ‘대한승마협회 살생부 사실무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살생부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살생부는 정윤희 씨 측근인 박원오가 작성한 것입니다. 박원오 씨 개인의 자필이에요. 이게 프린트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허위 조작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박원오 씨 개인의 자필이란 말입니다. 박원오 씨가 저한테 준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시겠습니까?

버젓이 존재하는 이 살생부를 정부는 애써서 왜 살생부가 없다고 하면서 정윤희 씨를 두둔했을까요? 여기서 정부가 답하고, 답하지 못하면…… 유진룡 장관과 조현재 차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기자회견을 두 번씩 자처했던 김종 차관은 분명히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지요. 그분들은 다 정윤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김종 차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전임 장관의 일이라고 하지만 존재하는 살생부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애써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실제로 이 살생부…… 사실은 그 전체 내용에 있어서 살생부가, 실제로 그러면 승마협회에서 이 살생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민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여기 있는 살생부 말고 1·2·3·4번 몇 가지 워딩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시도회장들이 오래 재직할 것 이것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주소만 이전하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회장하는 것 이것 문제다 등등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워딩이 여기 그대로 실려 있어요.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워딩을 이것을 보고 써준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이런 살생부가 존재하는 것을 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살생부라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했습니까? 왜 정윤희 편을 그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용교 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설훈** 예, 말씀하십시오.

○**서용교 위원** 질의하면서 할까요?

○**위원장 설훈** 말씀하십시오.

○**서용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용교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대체로 보기에는 추측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중에 제대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조금 전에 명확하게 발언 중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상주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해서……

○**안민석 위원** 전화했다고는 안 그랬어요.

○**서용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 전화했다고 안 그랬고, 그쪽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경찰들의 이야기예요.

○**서용교 위원** 경찰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안민석 위원** 그것은 지시한 사람들이 잘 알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밝혀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면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뒤에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아까 체육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거주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장기 재직하는 분, 이런 것 제 기억에는, 제가 본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상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이런 중요한 부분은 조금 근거를 밝히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위원** 말씀하신 것은 내용의 일부인데요. 제가 필요하면 살생부 내용하고 청와대 발언하고 대조를 하고…… 이것은 이미 제가 4월 달 대정부질문할 때 대조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올린 바 있으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기꺼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배속을 받고 상임위 활동을 한 지, 이번 하반기 때 와 가지고 안민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상황을 제가 지금 다 살펴볼지 못했는데 그 부분들 제가 질문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되게 중대한 사안들은 근거나 추측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정부가 답변을 할 때나 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진실을 따지고 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면을 잘 살피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차례입니다.

○**서용교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세계사 시험 문제 정답 처리를 하고 나서 정답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띄웠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서용교 위원** 이게 법률적 성격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이 행정처분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서용교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만 띄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 정정된 점수를 확인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그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핸드폰 번호나 아이핀 인증번호로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시험을 치고 재수생이 되면 핸드폰을 대부분 다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하기가 힘들고, 이런 연유로 우리 교육부가 일단 법 원칙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에게 마지막까지 통보되도록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후의 소송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가급적 확인해 가지고 본인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지금 가만히 보면 법률의 대가이신 장관께서 나중에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수능시험을 치거나 시험을 치고 나면 결과도 학교로 보내져서 선생님들이 대리로 학생들한테 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치고 사라지는, 제 경험상 보면 시험 치고 학교 안 나오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전달도 안 될 거고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소가 바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문자 서비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행정처분이 정확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완성된 법적인 조치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 예인 것처럼 이 부분을 다시 개인들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

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전체 법령 정비 부분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원 충원이란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을 제가 알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선 학생들에게 통지하는 문제요, 이 부분은 개별 학생에게 일일이 통지하는 것으로 하지 홈페이지나 이러한 데 띄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학교, 졸업 고등학교에 연락처를 파악하고요, 또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미연락 학생들의 최근 주소지도 별도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또 연락을 하고, 행정 절차상의 공고 절차도 병행하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혹시라도 연락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에 갔으면 군에 간 것까지도 확인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럴 때에는 마지막 모든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잘 못 들어서……

○서용교 위원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전체 법령 정비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히셨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선 제가 와 보니까 솔직한 제 심정이 법령 숙지와 소송이 많아요, 교육부에. 그래서 이 소송을 정확하게, 소송 전에 많은 대비를 하고 또 소송도 적극적으로 하고 함부로 남소는 또 우리 쪽에서는 안 하고 이런 방향을 잡고, 첫째는 법령집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법령과 판례와 여러 가지 우리의 훈령, 판례를 정리해서 숙지하도록 하고 또 법률지원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부 직원 중에도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들을 좀 더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광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제가 지금 했

습니다.

○서용교 위원 올해 사고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또 곧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래 공연 3000명에서 신고단위를 1000명으로 내리는 하향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건데 지금 문화부 차원에서도 어떤 시행령을 만들면 아무래도 건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공연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그 규모에 맞는 새로운 시설 조치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신설된 국민안전처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협의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소방방재청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끼리 현재 이 안에 있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갖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외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서 공연장 안전선진화시스템을 저희들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결국은 정부 원안대로 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국에 한 600여 곳 안전시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서용교 위원 할 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초 자료들만 가지고도 열악한 곳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열악한 지역부터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지방공연장 이것을 두루 좀 살펴서 순차적으로 하는 데 사업이 어디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끌고루, 그다음에 또 특정지역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끌고루 살펴서 그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서용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제 질의 전에 아주 간단한 의사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께서 안민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실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타가 다 공인하듯이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은 체육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교문위 내에서 이예리사 위원님과 함께 가장 전문성이 높은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언론 보도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정부질문까지 해 가면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해 달라.’ 그리고 위원장에게 그것을 마치 주의를 주라는 뜻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뜻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서 이 점은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안민석 위원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시는 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고, 도대체 소관 상임위를 그리고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이렇게 우습게 일축하는가 하는 데 좀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제가 질의드릴 몇 가지 내용을 좀 확인해서 답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쭙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정운회 씨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 4월 정운회 씨 딸이 상주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했는데 국가대표 선발을 놓고 경쟁하던 김 모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날 상주경찰서가 대회심판위원장 등 심판진을 조사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좀 비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모르신다고 할 테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이상한 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앞뒤 상황이, 정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 아니, 판정을 가지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심판진들을 불러다가 조사했는데 체육 담당하는 장관이 경위를 몰라서 잘 대답을 못하겠는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것도 상식적으로 답변을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체육국장님, 신중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유기홍 위원 아까 진 과장하고 통화했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유기홍 위원 노 전 국장하고도 통화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몇 시쯤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오전 중인데 제가 정확한 시간은……

○유기홍 위원 그것 핸드폰 통화기록 확인해서 저한테 시간 따로 알려 주십시오.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출장가기 전이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세종시 출장……

○유기홍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은 핸드폰 놓고 외출했다고 지금 전화 통화 안 되는데……

시간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세종시 출장 간다거나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그런 이야기 제가 전화할 때는 못 들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면 뭘 물어봤지요? 뭘 물어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한겨레 기사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파악을 한 바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기홍 위원**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이 진과장을 불러서 승마협회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조사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제가 아침에 전화로 물어본 것은……

○**유기홍 위원** 아니, 갑자기 조사를 할 것이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이 알아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렇게 가서 조사합니까?

우선 이 경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유기홍 위원** 위치에 있지 않다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제가 아침에 전화로 물어본 것은……

○**유기홍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치에 있는 것 맞습니다. 전임자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장관님,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확인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김종덕** 어떤 것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유기홍 위원** 불러서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김종덕** 그 당시에 과장과 국장을 불러서 조사했는지요?

○**유기홍 위원** 아니요,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이 진과장을 불러서 ‘승마협회 조사하라.’ 이것은 진과장한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 승마협회를 조사하게 됐나, 그것 지금 확인 안 하셨잖아요?

한겨레 보도가 문제가 되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뭐가 핵심적인 포인트인지를 알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하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김종덕** 지금 제가 보고받

은 것은 실제 그런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홍 위원**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 국장이 통화를 했는데 조사했는데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김종덕** 이게 단순히 이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기홍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김종덕** 이것만 특별히……

○**유기홍 위원** 자,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모 행정관이 진과장 불러서 승마협회 조사 지시했는지 이것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인가?

체육국장님, 어느 게 상식이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조사를 했는데 보고서를 안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상식에 맞습니까,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유기홍 위원** 아니,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서가 아니고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도……

○**유기홍 위원** 구두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아니, ‘반드시 모든 경우에 보고서를 만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지금 모른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내가 새로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보고서를 안 만들었으면……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했으면 누구한테인가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조사는 했는데 보고도 안 하고 보고서도 안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제가 물어본 것은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여부까지만 물어보고요, 그 이후 다른 사항은 제가 물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 전 국장하고 진 전 과장은 지금도 문체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조사……

우선 본인들 여기 지금 출석시킬 수 있으면 출석시키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전화 안 받을 것입니다. 김종 차관이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장관님은 전임자 일이라서 모른다고 그리고 체육국장도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팩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확인했더니 조사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고 조사한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하는 것 상식적이지요?

장관님, 이것 파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장관께 요청드리는 것인데, 지금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 전 국장하고 진 전 과장 통화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통화가 되면 우선 구두로라도, 우선 유선상으로라도 지금 제가 했던 이 핵심적인 질문, 조사 경위, 왜 조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안 만들었으면 왜 안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주 대단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리한 요구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확인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무리한 요구 아닌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그런 조사가 따로 있었다고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유기홍 위원 우 국장이 통화했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따로 이것을 위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고요, 실제로다가는 전체 감사의 일환으로다가 이게 진행되었다가 들었고요. 실제로다가 아마 이 당시에 태권도 외에도 여러 개의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기홍 위원 또 그 얘기 하시는데요, 그 조사하고 이 조사는 다른 조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유진룡 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했던 체육계 전반의 개혁을 위한 그런 조사와 보고 말고 이것은 승마협회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된 겁니다,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시를 받아서.

확인도 안 하셨다면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몰고 가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까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조사가 시작됐는가 그 문제를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유기홍 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까 우 국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이 진 과장한테 조사를 지시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는 민원들이 들어 오니까 여러 군데의 민원들이 같이 조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장관님도 벌써 얘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체육계 전반의 개혁을 위한 조사라면…… 그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 국장이 통화한 것은 조사를 했는데 보고서를 안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보고지요.

○위원장 설훈 유기홍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 전 국장하고 진 전 과장이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회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문체부로 하여금 그 두 사람 빨리 수배해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예.

한선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교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안민석 위원이 질의할 때 김종 차관이 일본 출장을 갔는데, 저 도 그게 석연치는 않습니다, 어제 갔다는 게. 장관께서도 6시 반에 귀국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12시까지 하면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위원장께서 김종 차관 출석을,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출석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훈 김종 차관이 6시 반에 귀국한다고 그랬으니까 귀국 즉시 우리 위원회로……

○신성범 위원 간사 간의 합의……

○유기흥 위원 아니요, 그것은 원래 참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은 간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위원장 설훈 참석 대상이에요. 참석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 필요 사안이 아니에요.

좌우지간 도착 즉시 공항에서 바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법안심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도 학교안전 공제사업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홍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고등학교 이하 유·초·중등학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은 학교 운영과 학생의 지위, 사고 위험 및 사고 발생률, 보험범위 등이 현재 학교안전공제사업의 대상이 되

는 학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학교에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학교경영자 배상보험에 가입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고 학생 1인당 약 15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사업 대상이 된다면 공제료는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의 검토보고에 보면 대학교가 공제회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 1인당 5000원 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홍준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정안이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의 보상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 운영의 특성과 공제 가입에 따른 부담액 등 경제적 효과 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설훈 위원장, 신성범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교육부도 그런 의견입니다.

○안홍준 위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관광 종사원이 관광 종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에 문체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 조항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관광 종사원도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안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등록된 관광 종사원은 총 20만 3895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 관광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 관광 종사원 수는 1만 5854명으로서 등록자의 7.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안홍준 위원 실제 관광 사업체에 종사하는 관광 종사원 수가 7.8%밖에 안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 92.2%의 자격 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광 종사원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격증 소유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의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기존 자격증 등록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 종사원 자격 취득자가 실제 취업하는 경우에 그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순히 응급도 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만 정하기 보다는 응급처치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광 종사원의 응급대처 능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존경하는 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다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법안심사 위원님들, 그런 부분도 심사 시에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과 민간 체육시설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지도·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 산하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러한 위탁 운영·관리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파악되어 있

습니다.

○안홍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자체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위탁 운영·관리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규제도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공공 또는 민간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위탁 운영·관리자 포함입니다. 해당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해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됩니다.

민간 체육시설업의 경우 현행법상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등록취소, 영업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은 그렇습니다.

결국 체육시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체육시설을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위반 시의 제재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 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나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문체부는 향후 중소 규모의 체육시설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종목별 안전·위생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체육시설 관리자의 법적 의무인 보험 가입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서 체육시설 전반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안민석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다.

○**안민석 위원** 문체부장관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청와대·문체부 간의 공문 수·발신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성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짧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여야 간사가 계시고 위원장이 안 계신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지학원의 김문기 상시대 총장 그리고 김길남 전 상지학원 이사장의 국감 중인 무단 출석 거부와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감 끝난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못한 이유를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임위 질의 중간이라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는, 다들 그때 다 공감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제 와서 달라질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즉각 이 두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질의……

○**안홍준 위원** 그것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신성범**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년 위원** 될 안 돼?

○**위원장대리 신성범** 아직 협의가 안 됐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동행명령까지 다 의결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 지금 바로 의결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의결을 안 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빨리 의결을 하자고요.

○**위원장대리 신성범** 논의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황우여 장관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입지원 특별법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저와 이상일 의원께서 함께 법안을 냈고 핵심은 내년도 대입전형에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해서 구제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조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심사과정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태가 교육 당국의 책임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즉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이 특별법의 명칭이나 정의나 목적이나 이런 데에 좀 더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것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과 같이 또는 10·27 법안 피해자, 삼청교육 피해자 이런 것처럼 모든 법들이 그런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법의 적용대상을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불합격한 사람, 제가 낸 것과 성적을 정정하여 통지한 결과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데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등급이나 표준점수를 재산출해 가지고 성적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사실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게 교문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좀 더 명료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교육부가 지금 평생학습시설 등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수능 성적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 폭을 좀 넓히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그렇지요, 이쪽의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잡았을 때 법의 간결성 이런 게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흥근 위원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은 실익이 없는 일반적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군 입대를 했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또 아까 여당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연락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이것은 대학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라는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박흥근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국가의 책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법인 고등교육법에 우선한다는, 즉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법안 명칭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원 외 특별전형의 어떤 근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법안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법안심사에 교육부에서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리고 법안심사는 조금 이따가 더 질의를 하고, 하나만 더 현안 관련해서 장관께 여쭙 볼게요.

상지학원하고 상지대학교가 지금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흥근 위원 신속하고 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상지학원은 지금 이사가 딱 1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지학원이 긴급처리권을 악용해서,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서 이사회를 스스로 개최해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설립자를 변경하고 교수와 학생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또 측근을 병원장으로 선임하거나 직원들 특별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에 보면 이런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학교 운영상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흥근 위원 저는 지금 상지학원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긴급처리권을 악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들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전 관련된 법안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학교안전 관련해서요.

교육기본법에 대한 부분은 내용 설명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흥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보고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장관이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절차상에,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기본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학교안전사고법이라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일반적인 보고사항에 넣는 것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만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체계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이 맞지 않다면 다른 법에서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가 제출한 내용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범위를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거나 반대로 밖에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정의를 학교 안팎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같은 의견입니다.

○박흥근 위원 끝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을 저도 같이 냈는데, 이 보고 체계를 좀 분명히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계통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고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자, 이런 것은 매우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별문제 없다고 교육부도 생각합니다.

○박흥근 위원 그래서 법안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저도 함께 참여해서 심사를 하겠고요.

문제는 단순히 보고 의무에만 그치지 마시고 사고 유형별로 상세하게 초동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반복 훈련도 하고 불시에 점검도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연구 용역 중인 학교안전통합법안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후에 좀 제안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하나만 짧게 여쭙 볼게요.

체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흥근 위원 제가 작년 국감에서 어린이 스포츠 활동이 체육시설의 설치와 안전기준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린이 스포츠클럽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체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의식이 결여된 실

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어요. 확인·검증하지도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체부에서는 스포츠클럽업이 기존에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저희 부에서 조사한 것은……

○박흥근 위원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답을 주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서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인터넷 포털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어린이 스포츠클럽’ 이르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 스포츠 장소가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상당수가 다 무보험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그냥 이렇게 안 된다고 바로 자르듯이 답을 주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 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현황을 조사해서 그 대책을 만들고 저에게 올해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사를 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원래 있는 시설들을 주로 활용하는, 10명이나 20명 단위로 조그만 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아마 여름에는 수영도 시키고 가을 되면 산에도 데려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종의 사설 학원처럼 그렇게 선생 하나가 운영하는 방식이라서 실제로 이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아마 보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스포츠클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업에서 이런 사설 학원 방식을 규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규제 문제 때문에 지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신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무방비

로 둘 것입니까?

하여튼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우선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능 피해 학생 구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민사상의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 파악이 좀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파악……

○윤재옥 위원 언론 보도에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일반적인 국가배상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재옥 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재옥 위원 그리고 수능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아주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두 단계로 우선 급한…… 다시는 이러한 출제와 검사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또 난이도 문제가, 이게 쉬운 수능이라는 말 자체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교육 과정에 따르는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우선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수능 자체에 대해서 생명이 다했다는 얘기부터 그래도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까지 국민 간에 편차가 커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마냥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정되더라도 3년 후에 시행되는 것이 우리 대입의 대원칙이라 그런 원칙에 따르

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장관님께서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습니까라는 수능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깊이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교육부가 전 책임을 인수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안전에 관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개별 의원들의 법을 언급하기보다는 장관님, 이것 꼼꼼히 검토해야 될 법들입니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사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 맞지 않고 또 관련되는 업을 하는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상당히 초래할 수 있고 또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와중에 그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좀 차분하게 법들을 검토하고 현장에 맞는지를 특히 정부에서 조금 검토를 깊이 있게 해주셔야 저는 법안심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현장에 맞는 단계적인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장관님이 생각했던 예산에 좀 차질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도 국회에서 많이 해 주셔서 우회적인 예산으로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는 재정교부금법 때문에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의 재정 형편상 또는 여러 가지 재정원칙을 빌미로 관철이 안 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좀 후속조치를 강구해서 교육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최후로는 특별교부금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은 시행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과 관련해서.

관광경찰 임대료라든지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영을 해서 예결위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역시 장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관광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 다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안에도 수학여행 관련 법안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안전대책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너무 단기에 발표해 가지고 조금 부실 대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국가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사실 검토가 조금 더 깊이 돼야 될 그런 대책들이 줄속으로 발표됐다는 느낌을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수학여행 안전대책도 지난번에 발표한 것 중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것은 털고, 이렇게 장관님께서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수학여행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여러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담아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장관님, 지금 문화체육부 2차관의 출장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게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출장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일본하고의 관광 교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요. 내년이 수교 50주년이라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관광 분야도 우선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관이 거기 참석한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윤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오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상정되었는데요, 지난 달 27일 양덕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제가……

○**도종환 위원** 현장을 직접 가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실 저로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체육관·식당 이 부분은 그 공법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왔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역 신문을 보니까요, 황우여 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봐서도 침하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험에 비춰 볼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선 거기가 매립한 연약지반인데 체육관·식당은 매트 공법이라고 해서요, 파일을 박고 암반에다가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매트 공법을 썼습니다.

○**도종환 위원** 갖다 얹은 것이지요, 그냥?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래서 그쪽은 D급 판정이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이쪽 학교도 지금 B급으로 판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파일이 암반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또 그것이 세 부분인가로 나뉘어서 건축을 했다고 그런데 그 각 부분 부분의 연계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법 시공이 제대로 됐는가를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여쭙봤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요,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마치는 대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기해서, 제가 그때 약속하기를 “학교 당국과 교육청과 함께 이제 곧 방학이 닳치니까 새 학기 전에는 확실한 대책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저는 철거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자들에 의하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안전 관련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건물은 B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짓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연결통로 같은 것은 D 등급을 받았고 하자가 발생했고, 저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B 등급을 받은 것이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합의를 한 합의문이 있더라고요. 교육청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시공사 대표가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보수·보강 후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정밀 안전점검 실시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보수·보강 후 건물의 침하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거 후 재건축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것은 봤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보수·보강을 실시하는데도 침하가 계속 발생한다면 철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침하가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까지도 5년 동안 계속해서 60cm가 침하했던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반 침하가……

○도종환 위원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여기 합의문에 보면 “보수·보강을 한 뒤에도 계속 침하가 일어나면 철거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직접 내려가 보신 뒤에…… 이 침하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건물 침하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철거한다”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철거해야 한다’고 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원 감사를 좀 신속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애

기 중에 있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부총리님 방문하시고 난 뒤에 지역 신문의 사설에서, 경북지역의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반이 침하하고 있는 판에 건물만 안전하다면 무슨 소용인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지반이 침하한다면, 건물보다 지반부터 안전해야 하는데, 지반이 안전하지 않은데 건물만 B 등급 받았으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사설에서 ‘모든 건물은 안전이 최고의 가치이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안전하지 못한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은 당장에 철거해야 마땅하다. 건물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담보한다.’ 이렇게 사설에서 이야기하면서,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의 지반이 지속적으로 침하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와 이전의 안전의식은 확연하게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지역 신문 사설에서 방문하신 뒤에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전문적인 감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부류로 지금 얘기들을 나눠 봤습니다.

하나는 파일이 고정 암반에 아주 제대로 박혀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는가……

○도종환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그렇게 암반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서요, 그것을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이 중도에 그쳐서 그것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이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반 침하로 파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검토를 하자.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감사원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저 화면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는 학교가요, 경북 경주의 안강제일 초등학교 강당이에요. 그저께 바람이 불어 가지고 강당 지붕을 덮고 있던 철제 패널 100여 장이

날아갔어요. 학생들이 등교 전이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등하교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한다면 아마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당 지붕이 교체 공사, 교체 작업을 마친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지난 10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요, 이렇게 바람에 또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했나 하면 “이번 공사가 폭설 등에 따른 붕괴 예방에 초점에 맞춰 시공한 것이다. 솔직히 바람에 의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 무슨 학교 공사가 폭설에는 안전하고 바람에는 안전하지 않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 건물을 지으면 폭설에도 안전하고 바람에도 안전하고 지진에도 안전하고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폭설에만 대비해서 짓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교육공무원이 이렇게 안이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또 보세요.

저것도 올해 2월에, 경주의 계림초등학교 강당이 눈이 내려서 붕괴가 됐어요. 강당 패널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았어요, 저렇게. 부실시공이 의심돼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때 100여 명이나 사상자가 난 것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난 다음 2월 달에 울산 자동차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무너져 갖고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숨진 바 있어요.

이런 사고가 나면 전부 학생들, 국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다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총체적 점검도 필요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제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고 나면 6개월,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처음에 학생 시절에 법을 배울 때 함무라비법전이라고 에덴 법전에 나오는 것에 보면 건축자의 책임이, “만약에 부실시공으로 사람이 다쳤으면 그 사람을 그와 동등하게 상처를 입히고 또 만약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를 저렇게 함부로 짓고 부실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에도 자체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는 학교 건설·건축 문제만큼은 절대로 용서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부터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자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경주의 두 곳도 즉각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응분의 처리를 하고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일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 관련해서 법안을 냈는데, 국회는 빨리 해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법안 같이 병합심사해서 빨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피해 학생들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각 대학이 피해 학생들 점수를 재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7일 날은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학생이 구제받을 걸로 예상되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조금 이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간접으로 피해 본 학생, 그러니까 피해 본 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합격이 되고 그것에 밀려서 거기서 불합격된, 간접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는 그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이 계셔서 교육부로서는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또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많은 과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위원** EBS 교재를 이제 또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스크린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거기서 틀리면 그냥 틀릴 가능성이 이번에 확인됐고 하나까.

그다음에 역시 수능의 문제인데, 두 단계 말씀도 하셨고 단기적으로는 또 고민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오늘 성적통지표 받았는데 지금 이 기사도 보면, 학생들 표정이나 이야기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수능에서 영어하고 수학 변별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떤 소감이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로서는 교육부장관의 입장에서 “난이도는 일정해야 된다. 교육 과정에 맞는 학습량과 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이 난이도 문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수능 검토할 때도 난이도 문제를 포함해서 어떠한 원칙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갑자기 방향이 그렇게 가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한 고민·성찰을 해 주셔서 이런 혼란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때 확인감사 때 제가 질문드렸고 장관님이 답변하셨지만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 관련해서 대학교·정부·국회 해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에 좋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 문제도 좀 더 검토해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현이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상일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 볼게요.

아, 교육부장관님께 하나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인재 양성 예산, 급히 했다가…… 국회에서는 해서 올렸지만 결국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상일 위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직은 결론을 못냈습니다마는 역사가 학자들이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논의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대책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부의 동북아역사대책팀 거기에 다섯 분식회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상일 위원** 거기 그렇고, 흠어져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있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쪽……

그런데 흠어져 있는 전문 인력을 모아서 차라리 어떤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요, 하던 일도 있고. 또 TF를 만든다면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한데, 지금 이게 흠어져서 예산도 덜 하고 또 인력, 연구도 제대로 심화가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고민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여쭙 보겠는데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윤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뭔가 확인을 하고 해소를 해야 되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는 진 과장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전언만 듣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조사보고서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것부터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감사의 일환으로서 조사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다가 그것을 표적 감사했다든지 이랬던 것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체육계 전반에 대



한 조사였고, 승마협회를 핀포인트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자꾸 양산되지 않게끔 팩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문체부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확인된 결과를 국회에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번에,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은 못 됐는데 내년 5월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고, 굉장히 큰 대회지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대회인데, 정부도 예산 편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시도 54억 5000만 원 예산 부담을 같이하기로 했고.

그런데 이게 법적 미비 때문에 예산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회 유치 신청할 때 이 법 시행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미비 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좀 빨리 처리해야 내년 5월 대회니까 사실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물론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건 저희의 몫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이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박혜자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수능의 이번 실패는 결국 오류하고 난이도 실패, 두 가지 다 문제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오류하고 난이도 조정의 실패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수능개선위원회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수능개선위원회 보니까 전부 다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재고등학교 그 한 분만 고등학교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대학 교수들이 잘 압니까, 아니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더 잘 압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신뢰도 때문에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또 교사분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실무팀들이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한 팀을 만들고 해서……

○**박혜자 위원** 예, 실무팀도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수하고 교사하고 비중을 한 5 대 5 정도 하셔서…… 실제 현장에서 수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것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교수들이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사 비중을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지만 시험문제 출제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난이도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고요.

또 EBS에 시험문제가 70% 연계되어 있는 것,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EBS에서 한다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EBS 교육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형화된 교육의 틀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재검토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법안소위를 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장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정말 4월 16일 세월호 이후의 학교 현장,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나름대로 지금 교과 과정도 바꾸고 수학여행 행태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이 되면 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학교 현장이 정말 달라졌을까요? 안전의식이 정말 학교 현장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아마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안 된……

○**박혜자 위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라 저는 지역구에서 현장의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변화의 조짐은 저희가 전혀 느끼지를 못 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오늘 들어온 법을 보게 되면, 제가 개수를 세어 보니까 39건이 지금 학교안전을 확보하자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학교안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지금 표명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관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지금 다양한 형태로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학교보건법 또 초·중등교육법 또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도대체 어떤 법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기본적……

○**박혜자 위원** 어떤 법에 이것의 핵심을 담아야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기본법을 두고 그리고 영역적으로 또 특별법 형식으로……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가지를 합해서 지금 학교안전법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학교안전법으로, 별도 기본법으로 모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안전이 확보가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박혜자 위원** 기본법으로 가고 다른…… 그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이나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그 밑에 부수적으로 넣겠다, 연계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영역적이니까

요. 영역이 달라서 기본법으로 너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고 그렇게……

○**박혜자 위원** 그런데 보건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법 간에 그렇게 연계될, 기본법 안으로 전부 다 연계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기본법은 기본적인 걸 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 예방, 보상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의 책임을 가지고서 교육 활동이나 체험 학습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역시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요. 그리고……

○**박혜자 위원** 그러면 학교장한테 전부 안전교육을 시킬 겁니까, 안전교육의 책임을 주자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학교장 책임 아래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해야 되겠지요, 현장에서는요.

○**박혜자 위원** 아, 현장에 계신 학교장님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지요.

○**박혜자 위원** 학교장이 말하자면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거기가 중심……

○**박혜자 위원**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식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학교 문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 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법안 중에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우리가 책임지고 또 높여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회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인성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두게 되  
어 있어요.

지금 교육부장관 산하에 산하기관들이, 소속기  
관들이 몇 개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그 진흥원  
에 대해서는 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교육부  
에서도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박혜자 위원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계속 만드는  
것이……

○박혜자 위원 평생교육진흥원과는 달라요.

평생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인성교육진흥원을 둔다고  
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은 교육의 본  
질이거든요.

○박혜자 위원 학생들의 인성이 높아지는 것 같  
지는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 얘기를 저희  
도 나누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부의 구조를 그렇게 팽창시키  
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리고 오늘 관광진흥법 개정안  
이 문체부장관님,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행사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런데 여기에 보면 여행업자가 국외여행의 인솔자  
를,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박혜자 위원 지금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아닙니다. 그  
렇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의  
무적으로 고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외여행 인솔자에게 안전교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다,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그만인  
상황에서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한 처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상일 국장, 저쪽으로 가 서세요, 마이크 들  
고.

요즘 무슨 문건 때문에 세간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정윤희라는 분은 자신이  
무슨 비선 실세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늘 얘기하거나 누구를 만나면  
청와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  
져요, 과거에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우 국장,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에 대해서 3  
선 금지 조항,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얘기했지요.  
그리고 확감 끝나고 11월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예.

○한선교 위원 또 그 뒤에도 여기 일곱 번 전화  
를 하고 문자를 두 번 넣었는데도 받지 않았지  
요?

자, 받지 않은 것은 당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국감장에서……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고약해, 사람들이. 그때  
도 물어보니까, 우리 보좌관이 11월 초에 보고서  
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

○한선교 위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휴대전화가 울림)

참나.

이 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  
면서도……

그 전화, 옆에 안 내려 놓겠어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늘 핑계를 청와대를 댔  
어. 댔어요, 안 댔어요, 저한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

○한선교 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세종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한선교 위원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위원님한테 말씀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선교 위원 우리 보좌관과의 통화에서도 “청와대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한선교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한선교 위원 우 국장, 당신 공무원이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한선교 위원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공무원 맞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조사해 갖고 보고했느냐?” 그랬더니 “구두보고했다”, 다른 질문 해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했어요. 지금도……  
 제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까, 느끼기에?  
 우 국장, 내가 지금 이상한 질문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아닙니다.  
 ○한선교 위원 당신이나 김종 차관이나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답변 태도도 그렇고……  
 그런데 왜 청와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고위공직자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 국장한테 힘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한선교 위원 답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제가 좀 부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교 위원 뭐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부지, 부적절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부족?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선교 위원 부적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한선교 위원 그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뭐가 부적절합니까?

그날 세종시 문체부 거기에서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예요, 그 세 글자를.  
 들은 나도 이것을 그냥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 지금 12월 말이 되도록 당신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펜싱협회 감독 자살한 건 기억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한선교 위원 그 사람은 경찰에 가서 공금 유용·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  
 ○한선교 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문화부에 설치된 합수반 수사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선교 위원 나중에 알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한선교 위원 그렇게 펜싱협회, 스포츠계, 체육계에 그 파다한 소문…… 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체육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말이에요? 체육국의 과장·사무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체육정책 합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왜 그 죄 없는 청와대는 파세요?  
 우 국장한테 할 얘기 있기도 하고, 이따 김종 차관 오면 내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관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사석에서 장관님한테 고해바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고 보고 봐도 봐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전부 위에다가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위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제 얘기가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하지만 국감 때도, 여기 속기록도 내가 가져왔어요, 우 국장이 고치겠다는 얘기를. 아시겠어요?  
 그때그때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예’, 이게 국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진짜?

제가 이따 김 차관 오면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교육부장관님, 문체부장관도 옆에 계시고 내가 국감 때도 또 얘기했는데 스포츠 4대 악 근절센터, 신고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아무 성과 없이 160여 건을 갖고 만지작거리다가 2건 검찰에 고발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악이라는 게 어디서 다 비롯되느냐 하면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전부 체육 특기자 대학 가는 데……

태권도 하는 아들을 가진 감독이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 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태권도를 훈련하다가 좌절이 되니까 이 못난 아버지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교육부장관님 좀 들어 주세요. 진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한두 개 덜 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정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관님 제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선교 위원** 아니, 그렇다면 4대 악 신고센터가……

이것 저기 올 연말까지 합니까, 또 넘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는 연말까지 하고 실제 그다음에 신고를 하는 신고센터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다가 유지하는 것은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한선교 위원** 그런데 신고센터를 유지하시면서 또 정확하게 판단도 하고 조사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면서 잘못된 협회가 있고 잘못된 임원이 있으면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맞습니다.

○**한선교 위원** 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에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사법적인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의를 낳는 거고 펜싱감독이 자살하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한테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저는 그것은 비정상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한선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동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저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도 묻고 싶고요.

현재 교문위에 제출된 법안이 교육부 그리고 문체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이렇게 해서 몇 건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설훈** 수백 건인데 지금 답변을 해야 됩니까?

○**염동열 위원** 대략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보니까 130건이고요. 교육부가 138건, 문화재청이 19건인데 이 안건 상정을 하는 조항을 제가 보니까요 안건 상정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이나 폐지법률안은 20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 그리고 법률안 외 의안은 20일 걸리고요. 이 기간이 지나서 30일 지나면 자동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법안 낸 지 오래됐어요. 상정된 법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낸 법안보다도 훨씬 더 후순위에 있던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돌발적으로 그리고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도 있고 또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급성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법률을 제가 읽어 보니까 그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당 간사님한테도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이 되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네요.

○**위원장 설훈** 염동열 위원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장이 낸 법안도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을 선정한 기준은 우선 급한 대로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만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하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전연 없었고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먼저 했으니까요. 제 법안 2개도 못 올렸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원칙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률안을 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법안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청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된 부처도 있을 것이고 일을 준비하기 위한 예측 가능한 시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점쳐져야 되는데 사실 너무 오래 묵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법안을 다 보니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만이 올라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총 한 370건, 거의 400건 정도 되는데 면밀히 한번 보셔서……

우리 이해는 합니다, 시급성 급한 것.

그런데 꼭 제가 낸 법률안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굉장히 시급성이 급한 겁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안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야당 간사님께서 면밀하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좌우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합의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우리 여당 간사님 좀 얘기해 주시구요.

○신성범 위원 저도 간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다만 제가 이야기 들기로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 한 900여 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가 아시는 대로 2기 교문위가 나오기 전에, 4월 달에 법안 의결을 서른 몇 건 하고 나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국회법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안심사나 예산심사소위에는 또 간사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이 주관을 하되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야간에 합의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 때문에 아직은 법안의 하나 하나를 놓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임시국회가 되면 다시 야당 측과 협의해서 급한 법안을 위원들의 요구도 반영해서 선정을 해서 여야가 협의를 한번 해 보

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한테 여러 가지 법안이 밀렸으니까, 이제 또 큰 현안이 해결됐으니까요, 법안 처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교육부장관님, 오늘 교육부에 상정한 안전이 총 44건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23건입니다. 제가 대부분 파악을 해 보니까 안전의식 고취 그리고 안전교육이 대다수예요.

제가 지난 국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 다 만들어져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앱까지 해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법률도 보니까 시설에 대한 건 사실 없어요.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21개 공립에서 하는 것과 시설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 면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 시범 실시, 교육 실시하게 예산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안 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특별교부금도 마련해서 보내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특별교부금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염동열 위원 별도로 안전교육 예산은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게 지금 교육감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하는 정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학교 실시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한번…… 직접 시설도 한번 가 보시고요. 그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그것을 접목시켜 나가는 과정도 직접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하여간 지방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덕 장관님,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알펜시아에 오셔서, 그전에 장관님께서 사실 임명되시고 나서 상당 부분 올림픽 준비에 대한 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바로잡히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지난 특위에서도 여야 위원들 여섯 분이나 문화관광올림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뭔가 된다…… 올림픽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 레저시와 지역 발전의 연계, 문화관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문화올림픽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약속했었는데 취소가 됐었고 또 올해도 전 장관님하고도 사실 약속이 됐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평창지역의 문화관광예산에 사실은 전부 다 담지를 못했어.

폐광 지역은 제가 폐광기금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디자인을 잘 짜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 지역에는, 정작 개최지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14개 법안을 만듭시다마는 체육 그리고 관광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올림픽도 관광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존경하는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따로 올림픽문화 관광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 되어 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예산을 어떻게든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염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위원……

아, 안홍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정 문제, 이게 사실 위원님들 사이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발의한 법은 먼저 상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은 발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중요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중요성보다도 시급성이 있는 법안일 때 여야 간사께서 합의해서 함께 상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법안소위가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법안소위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앞으로 하시더라도 상정을 가능하면 법에 준해서, 30일 같으면 자동상정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하고, 검토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일은 많습시다마는 좀 열심히 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봐서 부처하고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위원님들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보류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19대가 마감이면 자동폐기되는 게 어찌면 몇 백 건씩 남는 이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의 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폐기처분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법안소위 위원장님하고 야당 간사님께도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안홍준 위원의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염동열 위원님과 안홍준 위원님께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3개 부처를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되는 법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안소위를 구성할 때 법안이 많으니까 법안소위를 교육 관련한 법안소위 그리고 문체 관련한 법안소위, 2개로 구성을 합시다 이렇게 야당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고, 오히려 거꾸로 여당 쪽에서 제안을 했어야 될 일을 야당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야당은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법안소위를 2개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거부를 했어요. 그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김태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승마협회 조사한 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승마협회만 조사한 건 아니고……

○김태년 위원 다 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

○김태년 위원 그러면 하여튼 태권도를 비롯해서 전 체육 관련한 협회들을 다 조사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왔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승마협회가 보고서가 없으면 다른 단체들도 보고서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이게 같은 시기에 조사가 됐으면 어디는 보고서가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갖고 있는 데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승마협회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 있습니다, 여기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김태년 위원 없다면서요, 자료가 없다면서요.

○배재정 위원 연말에 한 거 있어요.

○김태년 위원 예?

○배재정 위원 연말에 한 거, 뒤에.

○김태년 위원 따로 한 것? 그러니까 함께 할 때 건 있는 거고, 그 뒤에 한 게 없다 이 말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설훈 그다음 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러면 언제 적 자료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게 2013년 8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별감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가 없다는 것은 언제 조사했던 것의 자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아마, 제가…… 9월에는 별도의 자료는 지금 따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체히 조사를 할 때 것은 자료가 있는 거고 따로 특별히 조사했던 것은 자료가 없다 이 취지의 답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특별히 그런 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까 조사를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이것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에……

○김태년 위원 지금 좌천된 담당 과장이 조사했다 이렇게 아까 전화로 물어봤을 때 답변을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게 아마 이것의 일환으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네요, 그것의 일환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게 그거……

○김태년 위원 뭐예요, 도대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게 그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위원장 설훈 그러면 장관이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아까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있으니까 잘못 알고 대답을 한 거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 이 감사 자료는 아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특별감사 자료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것을 여쭙 보셔서 가지고 그런 자료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뭐고, 언제 조사한 자료는 갖고 있는 거고 언제 조사한 자료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언론 지적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8월 달부터 네 달간 조사한 자료는 특별감사 자료로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조사 자료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가 없다라고, 아까 조사는 했으나……

체육국장 일어나 보세요.

○신성범 위원 파악을 했다고 했지.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거나 조사한 거나요.

“조사 또는 파악은 했으나 자료는 없습니다.” 이걸 언제 적 한 거예요? 언제 때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한겨레신문에서 이야기한 그 보고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뭐 조사를 했다며요? 아까 담당 과장이 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건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김태년 위원 그건 언제 한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그러니까 국장과 과장 인사가 9월 1일 자였습니다. 작년 9월 1일 자였는데 그 전에……

○김태년 위원 아이참, 시기를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앉으세요.

보통 조사를 하면 자료를 만들잖아요,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김태년 위원 자료가 없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되는 답변입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래 의결할 때 다시 출석하셔야 되거든요. 그 때까지 이 내용들 다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시간이 다 가 버렸는데요.

교육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수능 출제 오류 문제 때문에 아주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피해자가 많이 생겼고. 궁여지책으로 이 피해 학생 구제 법안들이 오늘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건 최소한의 피해 구제 대책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올해 복수 정답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것 반복되고 있는데, 책임 누가 집니까? 부에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부에서요?

○김태년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부에서는 제가 사과를 하고……

○김태년 위원 장관이 사과하는 것으로 이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이 다 면해지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김태년 위원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것 제도적으로 방지책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우선 급한 오류 문제하고 난이도 문제는 3월까지의 매듭을 짓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년 위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것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저는 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 교육,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건가 의심이 갑니다, 이번 예산심사할 때 보니까. 특히 기재부가……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거고요. 아주 망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을. 나중에 최경환 장관, 기재부 관료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총리로 승격이 됐는데, 이 의미가 뭐겠어요? 교육·복지, 교육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를 신장시키고, 좀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고 교육부총리로 승격시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이게 대체적으로 기재부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력해요.

왜 부총리로 승격을 시켰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번 예

산심사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모르겠어요.

누리과정도 지방교육청 소관이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뭐 법령도 맞지도 않는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렇게 호소를 했건만 이 인건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니 이것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

유아 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를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데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교육부 동의를 받아라, 또 이것은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안은 시·도교육청 소관이니 중앙정부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안은 교육부가 다 틀어쥐려고 하고.

좀 생각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뭘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5조, 이렇게 편성이 됐었지요? 담뱃세 인상분 때문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소방세가 신설되면서 20%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39.5조 편성됐던 이 지방교육예산에서 1100억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재부가 교육부하고 의논 안 했잖아요, 그날 밤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야 의원님들이 그때 특교를 하신 거지요.

○김태년 위원 아니, 기재부가 판단을 할 때 여야 저기 하지만 기재부가 판단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기재부가 동의를 구하잖아요. 더구나 세입과 관련한 문제인데……

그런데 도대체 교육부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 주무 부처인 교육부한테 이 1100억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1100억 원 이상이 삭감되는데 교육부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심사 마지막 협상팀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교육부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계셔서.

○위원장 설훈 예, 장관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교육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교육재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2016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만약에 이러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우회적이거나 5064억이 또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원입법으로 지방교육부금법에 따라서 1100억 정도가 다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고 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지방교육재정이 보완됐다는 점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는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도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급히 입법이 마쳐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는 이 재정 체계 자체를 한번 검토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그래야 교육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같이 의논하셔야 되겠지요, 정부도 서둘러야 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교부금율은 그것도 또 하나의……

○김태년 위원 또 하나,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법적 시비, 법령에 대한 시비가 매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하고 합의하셨던 대로 법령 정비, 이것 또한 서두르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교육감들하고 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김태년 위원 아니, 자꾸 지방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법령 정비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서둘러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건 서둘러야 되고.

2018년이 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밑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교육재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전환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과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부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어쨌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교육부장관이 함께했던 처음 예산안 5600억과 지방채 이자까지 포함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재정 당국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이번 예산 내용에서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기획재정부 쪽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비비에 책정된 것 같으니까 그것 활용할 때에 있어서 지금 그러한 말씀 주신 것을 잘 감안해서 부족하나마 그 안에서 원활하게 교육재정이 돌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성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연속선상에서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여와야가 그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다투더니만 어젯밤 10시 10분에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걱정 안 해도 되느냐, 걱정이 좀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토털 5064억 원이 증액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국고가 우회적으로 지원된 상황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 5064억 원의 구성을 한번 설

명해 보세요. 5064억 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저도 사실 표를 아직 못 봐 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혹시 설명할 수 있으면 뒤의 실무자가 하셔도 좋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구성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이자 부분도 포함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교부하거나 여러 가지 활용할 때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원래 재정 당국에서 안 주려고 했던 그것을 ‘우회 지원’이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4731억 원이 증액됐고 이자가 333억 원 이렇게…… 666억 원입니까, 이자 지원이 333억 원입니까?

○김태년 위원 예비비로 333억, 특교로 333억.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333억입니다.

○신성범 위원 예, 저기에서 특교로 333……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방과후학교 지원 부분이 986억, 대충 이렇게 계획만 넘어와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 지방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자를 대주는 게 666억 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333억이요.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에 특교 333억이 들어가니까 전부 합하면 666억 원이 되겠지요, 지방채 이자 지원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신성범 위원 그다음, 대체사업이 4731억인데 세부내역은 아직 부총리도 모르고 계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신성범 위원 계획을 그러니까 뭐뭐 하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산에 항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범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방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재정 부담이 조금 완화된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다는 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액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는 하나도 안 해 놓았잖아요,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안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현재 전북한 군데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다 좋은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5064억 원이 증액된 상태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 게 3조 8000억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3조 8000억에 1조 1000억을 더 내려 보냈지요.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4조 9000억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4조 9000억의 지방채 발행을 했고 여기에다 5064억 원이 증액되면 내년도 2015년도의 누리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후면 핑크가 남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보다 더 추가 발행하려는 지방채에서 5064억이 감액되는데 1100억이 또 이쪽에서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나머지 부분만 지방채 발행에서 감액되게 됩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또 모자랍니까, 이렇게 해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필요할 때에……

○신성범 위원 어제 통과된 예산안을 갖고도 좀 모자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산을 하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얼마나 모자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건 아직은 계산하기가 어렵지요. 이제 편성해 나가면서 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추가 지방채는 얼마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발행 규모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말씀드리기 좀 이르고요.

다만 지방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국고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면 그만큼 재정 부담분이 경감된다는 의미가 있지요.

○신성범 위원 그러면 야당 위원들은 물론 여당 위원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내년

2015년은 이렇게 넘긴다 칩시다.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급하게 국고 지원해 가지고 넘기면 2016년도는 우리가 재정 당국으로부터 설명 듣기로는 올해 2015년도보다 6조 원 정도 더 교육재정이 늘어날 거다,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추정하는데, 만약에 수치가 예측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 이야기를 미리 하자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2015년 사이에 2016년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게 뭐가 있냐고요, 부총리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조치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은 이미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 후에 과연 이렇게 계속할 때는 국가가 국가보조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변수를 하나 넣어 두어야 됩니다.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에 따라서 아주 고정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게 2015년도에는 정부 당국 간에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번 2015년도 예산은 제가 부임한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지방교육재정 부담으로 가는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또는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이번의 특별한 법 중의 하나가 담배세가 오르면서 개별소비세가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넘어가고, 그래서 교육교부금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저도 계산을 못 해 보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교육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담배세, 담배값이 오름으로써 생기는 세금 증가분 중에 교육 분야를 원래 한 3000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법이 되면서, 갑자기 국회에서 그런 입법이 되면서 1100억 정도가 거기서 줄어드는 것으로……

○신성범 위원 잠깐, 삼천 몇 억 원이 원래 계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지요.
- 신성범 위원 2000억 가까이……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중의 일부가 소방시설로……
- 신성범 위원 넘어갔다 이런 취지지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순감이라기보다는 예상치에서 줄어든 거네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지요.
- 신성범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할 거예요, 다른 부처하고?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정산해서 부족할 때는 올해는 지방채로 보전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우리 교육청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훈 신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년 위원 간단한 것 확인 한번만……
- 위원장 설훈 예,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년 위원 우리가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원래 순증분이 5233억이잖아요, 순증분이 5233억인데, 정산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2013년도 지원액 중에 정산액을 기재부가 500억을 추산해 가지고 500억을 빼 버렸어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는 그때 이것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50억 정도로 의견을 냈는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500억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빼서 지금 4700억 정도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 김태년 위원 순증분을 다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정산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추산하면 이백 몇 십 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는 500억 이래 가지고 기재부가 빼 버렸어요. 지금 소관 부처, 해당 부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요.

이자를 지금 666억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아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율? 그래서 예비비에서 절반 333억, 그다음에 장관 특교에서, 이것 다 지방재정교부금 특교인데 특교에서 333억 이

렇게 해서 666억을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이 특교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장관 동의를 받았나요, 마지막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제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태년 위원 아니, 특교는 지방재정교부금 전체 액수에서 장관이 4%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육부의 목적사업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특히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자 지원을 특교로 하겠다 이렇게 특정 지으면서 장관 동의도 안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기재부가, 기재당국이 예산을 짜고 그럴 때 각 부서의 동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정액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일반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관께서 갖고 계시는 특별교부금은, 이것으로 이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 정도는 묻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무 부처 장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자 666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정권의 정부 운영 형태가 이렇다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액으로 딱딱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올해는 이게 재정이 워낙……

○김태년 위원 제 말씀은, 예비비로 666억을 다 편성했으면 말 안 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333억만 편성하고 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에서 333억을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기재부가 의견을 내 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께서 특수목적사업으로 써야 될 이 교부금에서 이자 지원하겠다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협의 한 번도 안 했고. 지금 정부

운영 형태가 이렇다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게 다 그런 이야기, 의견이 오고 가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장관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총액으로 내려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지방채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액수 자체, 금액은 아직 확정되어서 하지는 않고 또 진행되면서 정해집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뭘 지적했는지를 지금 못 알아듣고 계세요.

○위원장 설훈 그러니까 장관께서 가용할 수 있는 특고 333억 원을 못 쓰게 되는데, 그만큼 줄어든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재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이렇게 줄어드니까 양해하십시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거꾸로 보시면 한 50%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라는 의견이 온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원래 100% 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100%? 원래 이자 100%……

○위원장 설훈 이자 100%는 여야 간사 간에 다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절반 부분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글썄, 이게 예결위 소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기……

○위원장 설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게 기재부가 한 거라니까. 기재부가 이자 지원 못 하겠다고 하다가 기재부가 낸 안이라니까요, 그게.

○위원장 설훈 우리 장관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계시네요.

그러면 이상일 위원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한선교 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7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설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6시 반에 비행기 내리면……

○위원장 설훈 6시 반에 비행기 내리면 여기 오면 한 8시 될 것 같습니다.

○한선교 위원 왜요? 여기 김포예요, 김포. 하네

다-김포.

○위원장 설훈 김포. 7시.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손들어 보십시오.

세 분.

그러면 이상일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상일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좀 여쭙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5분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아마 서울 일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의, 교육청에서 담당이지만, 유치원 원서접수 마감이지요? 마감하는 경우 많지요?

뒤에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마감하는 곳이 많고 내일부터 추첨하는 곳이 많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학부모들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조회연 교육감님께서 중복 지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유치원에서 이게 처음에 명백히 아주 명시적으로 어떤 게 중복 지원이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고요. 유치원 안내에서는 서류 접수는 중복으로 해도 된다, 다만 추첨 때 한 군데만 골라라, 그러니까 가·나·다일 경우에 가군에 해당하는 A·B·C·D 유치원에 다시 서류 접수를 내고 경쟁률 같은 것을 보고 추첨할 때 학부모들이 한 군데 가서 추첨하면 된다는 식으로 뒀다가 서류 지원만 해도 중복 추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중복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서울시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야기를 믿고, 왜냐하면 중복 지원하면 중복 지원 자체를 합격 취소라는 이야기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가군에 한 군데 나군에 한 군데 다군에 한 군데만 지원한 학부모들도 계시고, 주민등록등본을 내는데 유치원에서 등본을 확인 안 하고 이름만 쓰고, 엄마 아빠 이름 중에 한 명만 이름 받고 생년월일도 음력으로 해서 내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낸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서울시교육청 이야기를 믿고 한 군데만 했던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담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께서 교육부에다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 가장 궁금하게 묻는 것은 뭐냐? ‘서울시교육청이 중복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교육부에 묻는데 교육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학부모님들께 답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이상일 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게 지금 접수가 마감이 됐고 내일부터 추첨이 된다면 어떤 학부모들은 한 군데만 지원했고 어떤 학부모들은 가군의 모든 유치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법적 근거가 없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은 아직 교육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접한 적이 없고 그동안 무난하게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시급한……

○이상일 위원 내일부터 추첨에 들어가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면 오늘 일 끝나고 나서라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우리 담당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사안을 조사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제가 아는 우리 국회 출입기자 한 분이 자기는 서울시교육청 얘기만 듣고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은 ‘아니, 정치부 기자가 그렇게 사정을 모르느냐?’ 엄마 이름으로 내고 아빠 이름으로 내고, 지금 확인도 못 한다는데, 일선 유치원에서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말씀은 서류는 중복으로 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내를 안 해 준 거지요, 중복 지원이 왜 안 되는지 중복 지원의 한계는 어디인지 범위와 한계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합격 취소한다고 그러는데 합격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지를 전혀 안내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밤이라도 시급히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좀 빨리해서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고 학부모들께 입장을 알려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신뢰의 원칙에 손상이 없도록 오늘 가급적 빨리 그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이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문화부장관님, 우리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연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50석 미만 공연장의 경우에도 안전사각지대인 부분을 제대로 안전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가 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종합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영세한 소규모 공연장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전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결국 이런 소규모 공연장들이 사실상 이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5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상연되는 공연일수가 총 230일 이렇게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2015년 예산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고 보시는지 안전대책은 꼭 필요한데 이런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문화부에서는 관리를 하실 것인지, 사실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이 우선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짧게 주시려면 지금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같이 답을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문화부장

관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교육부장관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학교안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연장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지난 국감에서 부총리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안전등급에서 상당히 위험한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 보고, 제가 국감 이후에 사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안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한 재난위험시설의 경우에는 보수비용을 국가가 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동안은 특별교부금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급까지는 철저히 하고, C급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한 단계입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특교가 매칭이 없이는 지원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매칭 부분은……

**○배재정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사실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교육청, 지역의 교육청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의 누리과정과 관련한 이런 많은 혼란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비롯된 건데요.

위급한 시설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힘들 경우에 국가도 나 몰라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원칙적으로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나 지방교육청도 우선순위를 삼을 때 아기들, 자라나는 학생들의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가 역시 안전시설 아니냐 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지금 배재정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부가 이 부분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저는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학교안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정작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다치고 나면 그제서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서로 다툼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문화부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몇 차례 제가 그 소극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규제만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서, 지원도 있어야지 이게 워낙 영세한 데라서 우리가 규제만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 이 극장 중의 거의 절반 이상은 아마 다 문 닫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요. 실태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지 무엇이 우선 급한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우선 당장 제가 예산 나오는 대로 먼저 이것을 하겠다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에 저희가 이 예산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기재부에서 머리를 더 쓰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화가 나서 한바탕 싸웠었는데요. 이게 머리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부족한 거라서……

저희가 보기에 전국에 전체 한 600개 정도의 공연장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300개가 소규모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120개 정도가 지금 동승동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큰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한 매칭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재정 위원** 내년에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문화부 내에서 빼실 수 있는 여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다른 데서라도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최대한 끌어다가 쓸 거고요. 현재 이것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억밖에 없습니다. 10억밖에 배정을 안 해 줘 갖고 이것은 조사하는 비용으로 다 아마…… 그것으로 다 써도 부족할 판이라서요.

○**배재정 위원** 같이 계속 의논하시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아니, 제가 먼저입니다.

○**위원장 설훈** 유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질의 전에 잠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관련해서요.

체육국장님, 통화한 시간 저한테 알려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알려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정회를 하면 알려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유기홍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정회를 하면 알려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알려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메모를 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유기홍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 때 말씀드릴 텐데, 태권도니 뭐니 다 같이 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했던 것은 보고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주장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없고 이것은 있으니까 이거라도 줘야 되는데 왜 그것도 안 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 그것은…… 예.

○**유기홍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에 이어서 세월호 침몰 사건 등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했고 공통점은 모두 인재라는 점입니다.

오늘 상정된 대부분의 법안들이 학교 교육활동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관련 3개 또 관광 관련 1개의 법안을 냈는데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이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학여행을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분명히 개념화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전체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다음에 김종덕 장관님, 관광진흥법은 관광여행의 계약서에 안전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큰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잘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황 장관께 하나만 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달 11월, 평가지표(안)을 발표했어요. 저희가 예산으로 한창 바쁠 시기에 이것을 발표해서 사실은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평가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방대학하고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퇴출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평가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 국정감사 내내, 심지어는 위원장님까지 포함된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결국 안 주고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고발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저희가 하겠는데, 지난 국감에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평가방식이 지방대 죽이기가 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저는 이번에 발표된 평가지표(안)도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사업을 조삼모사식 정책 변화만 제시하고 결국 지방·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구조개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에게 해당  
실·국장을 통해서 우선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유기홍 위원 정윤희 씨 관련해서 김종덕 장관  
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김종 차관이 일본에서 아마 아  
까 김 장관 하신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요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그 보고서입니까? 저한테……

이것은 여러 단체를 같이해서 나중에 유진룡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보고서이고,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  
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겨레신문에 보도되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보고서는 이 보고서가 아닌 거  
지요. 그런데 다 지금 이것으로 입을 맞추고 있  
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체육국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  
국장, 전 과장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사는  
했지만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식  
적으로……

여기 이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만들지 않은 보고서의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임자들과 얘기해서, 조사는  
했는데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다, 분명히 이게 아  
닌 다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과정 속에  
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마  
금요일 날 우리 상임위가 다시 있을 때 김종 차  
관은 반드시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와  
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예종 김봉렬 총장  
하고까지 통화를 해서 진재수 과장의 행방을 수  
소문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들이지요. 그리고 노태강 전 국장은 손님을 만나  
러 외출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피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김종 차관과 더불어서 이 두 사람  
이 금요일 저희 상임위에 반드시 출석해서 그 조  
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 국장, 체육국장이 얘기하셨던 조사는 했는데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던 그 조사, 왜 이루어졌는  
지 그리고 그것이……

실사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보고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했으면 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 내용은 뭐고 그 조사  
내용을, 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하는  
것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 차관은 이미 일본에서 아까 장관님이 하  
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왜냐하면 아까 우 국장님 얘기 속에서 밝  
혀졌어요. 조사는 했는데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  
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만든 조사와 다른 별  
도의 조사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 조사의  
경위, 조사 내용,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아까 존경  
하는 이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의혹이  
점차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노태  
강 전 국장, 진재수 전 과장이 금요일 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선 저도 지금 김 장관께 부  
탁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기홍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날 출석을 명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훈 유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이상일 의원님과 박홍근 의원님께서 법  
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이어  
서 올해도 수능 출제 오류가 되풀이되었는데요.  
평가원장이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를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까지 8명의 역대 평가원장  
중에 수능 혼선 등의 사유로 몇 분이 중도 사퇴

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교육부 기억으로는 5명쯤 된다고 그러합니다.

○도종환 위원 5명이요? 8명 중에 5명.

전임 성태제 원장의 경우는 임기를 채웠지만 작년의 수능 출제 오류 문제의 책임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분도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본다면 8명 중에 6명. 교육과정평가원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평가원 건물에 있는 파스타 집 한 곳에서 무려 8억 원이나 법인카드를 결제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평가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능시험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평가원에 예산 지원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도종환 위원 얼마나 지원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 100여 억쯤 된다고 그러네요.

○도종환 위원 정확하게 아는 분 혹시 뒤에 안계세요? 잘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예산 부분이라……

○도종환 위원 17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기초실장이 지금 대기발령 중입니까, 대기발령을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직 아닙니다.

○도종환 위원 어떤 징계조치 같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박백범 실장이 지금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은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요.

○도종환 위원 국민들은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해서 교육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육부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평가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대개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묻고 그런 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예산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제대로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잘 모르고 그런단 말이지요.

평가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도종환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네요? 이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김대중 정부 때로 제가……

○도종환 위원 다들 지금…… 국민들은 다 평가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일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감독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이든 뭐든 집행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잘 모르시잖아요.

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변경이 되었던 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평가원이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평가기관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수능시험이라든가 검정고시라든가 임용시험이라든가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 이것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수능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그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민들은 다 책임을 교육부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책임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부가.

되돌려 놓고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지만 책임도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면서 사건이 터지면 계속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번에 수능에 대한 검토 할 때 그 말씀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교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선교 위원 1분만, 수능 얘기가 나와서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저희 때는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그 예비고사라는 것은 서울지역, 경기, 강원, 충청남도·북도 해 갖고 예를 들어 서울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 입학정원의 2배수를 뽑아서…… 초기에는 그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본고사에 반영도 안 하고.

저는 그런 자격시험을 주고 대학이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는 방법의 자율성을 주는 것은 어떨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설훈 박혜자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박혜자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안을 지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여러 말씀들이 계신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결론이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설훈 박혜자 위원.

○박혜자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아니, 문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게 청와대가 문체부에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청와대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각 부처에 어떤 형태로 지시를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이래 본 적은 없습니다. 교문수석실하고 저희가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만, 유선으로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하고 주로 교문수석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오늘 가령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문체부에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유선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또 문책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문책 요구도 그냥 유선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박혜자 위원 그냥 모르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때의 일을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라서요.

○박혜자 위원 보통 커뮤니케이션한다라고 하는 게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때 즈음해서, 2013년 5월 즈음해서…… 전화의 기록은 그러면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 기록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박혜자 위원 아니, 교육문화수석하고 통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업무상의 관련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하더라도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 장관이 지시를 직접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전화의 기록을 씁니까, 안 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 기록을 따로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냥 전화하면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청와대하고 하는 것도 아무런 자료를 안 남긴다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시를 받거나 그런 일은…… 혹시나 장관한테 지시를 내리는 일은 수석을 통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통령께서 전

화를 하시면……

○박혜자 위원 아, 직접 전화를 주시면 그 전화를 대통령한테 받은 전화인데도 기록을 안 해 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국·과장에 대한 교체 지시를 직접 대통령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지는 않다니요? 그 기록이 없다는 게 그러지 않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요, 국·과장에 대한……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신문에 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신문,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박혜자 위원 지금 문체부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 지시도 없었고 또 국·과장에 대한 교체지시도 없었고, 그런데 조사지시도 없었다면 이것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박혜자 위원 보도자료로 끝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보도자료를 내고 이것이 더 확산되게 되면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세계일보에 대해서 각종 고발이 들어가는데요. 세계일보보다도 오늘 보도된 승마협회 관련되어서 더 심각하게 고발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박혜자 위원 그런 의사예요, 뭐예요? 저기에서 명예훼손이라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고발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검토할 겁니

다.

○한선교 위원 알아서 하겠지요.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신의진 위원, 이에리사 위원, 박홍근 위원, 조정식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저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 것도 서면질의 있어요.

○위원장 설훈 예, 유기홍 위원으로부터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박혜자도 서면질의 있어요.

○위원장 설훈 박혜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고, 강은희 위원으로부터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5일 10시에는 소위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전체회의 의결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우여 장관님, 김종덕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강은희	김태년	김학용	김희선
도종환	박대출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용교	설훈	신성범
신의진	안민석	안홍준	염동열
유기홍	유재중	윤관석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정진후
조정식	한선교		

○청가 위원(2인)

박주선 유인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김한근
전문위원	박용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 장관	황우여
차관	김신호
기획조정실장	박백범
학교정책관	오승결
창의인재정책관	박제윤
학생복지안전관	이진석
대학정책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제1차관	김희범
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정책기획관	황성운
예술정책관	김상욱
관광정책관	김철민
체육정책관	우상일